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오후 1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주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후원: 인권단체연석회의

목차

[들어 가며]	
강요된 희생, 사라진 인권	----- 5
[인권 침해]	
1. 협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3
2.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	----- 23
3. 마을 공동체 파괴	----- 43
4. 공사 과정에서 한전/시공사/용역의 인권침해	----- 51
5. 경찰의 인권침해	----- 71
6.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 81
[결론]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 95
[참고 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 개괄	----- 105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	----- 106
정보 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 118
농민인권선언	----- 119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일부 발췌	----- 125

1. 들어가며

강요된 희생, 사라진 인권

1. 조사 배경

밀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박하였다. 밀양의 깊은 산속을 구부정한 허리로 등산하는 할매들의 소식은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새롭게 공사가 재개된 2013년 5월 20일, 알몸으로 저항하는 할매들의 사진은 인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밀양으로 불러 모았다. 지난 5월 24일 밀양을 향하는 탈핵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은 인권활동가들은 그곳의 상황을 정리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전이나 시공사, 별목 인부들과의 싸움에 탈진한 할매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인권이 해야 할 일을 절감하였다.

이미 국회 증언대회와 UN인권옹호자의 방한을 계기로 밀양의 인권소식은 정리되어 우리사회에 소개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법률과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이 송두리째 박탈되는 과정을 겪은, 또는 겪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절박한 투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권침해조사활동을 통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들이 공사저지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욕이나 폭행, 괴롭힘의 행위에 멈추고 있지 않음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전에서 진행하는 765kV 송전탑 사업은 사전협의과정부터 보상, 진행과정 모두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겼고 수 천 년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법률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공권력은 폭력과 성폭력, 모욕과 수치심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도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와 한전, 경찰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한전과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인권의 기준으로 문제제기 하고자 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한다. 밀양의 765kV 송전탑 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 전력수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체와 개개별 인간의 운명이 함부로 취급된 현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에서, 잘못 채워진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고 주민들이 절망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해결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 이 보고서의 소임은 그것이다.

2. 조사과정

(1) 조사단 구성

밀양 송전탑 현장에 다녀온 인권활동가 중심으로 밀양 인권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긴급히 제안되었다. 첫 모임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있었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 다산인권센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이 모였다. 이들은 밀양 상황 등을 공유하며 밀양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권침해조사내용은 현장방문과 자료 분석, 주민 건강상태 진단을 기본적인 토대로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현장조사 일정을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공유를 통해, 공통질문지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조사단 구성을 밀양 인근 지역 인권단체(울산인권운동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들로 확대했으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주민 건강검진과 건강권 조사활동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와 한전,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의 현장조사와 건강권 조사는 5개면 10개 마을에서

이뤄졌다. 참여단체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이하 ‘대구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였다. 민변은 마산창원지부에서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조사단은 각 마을별로 들어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 현장들을 직접 답사하였다.

이후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각 기관들에서 받은 자료와 기존 증언대회 자료 등을 분석하는 모임이 4차례 더 진행되었다. 한전의 보상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참여하게 되었다. 조사보고회는 밀양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영상과 주민들의 증언, 진상조사보고, 건강권 보고 등의 순서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개요에서 밝힌다.

(2) 조사 방법과 범위

1) 조사 방법

현장 조사(2013년 6월 6일부터 8일)
 주민건강권 실태 조사(2013년 6월 9일)
 정보공개청구 내용(한전, 경찰 등)1)
 국회자료(장하나, 김제남 의원실 협조)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2012년 7월 23일)
 대책위 자료



△101번 공사 현장(단장면 태릉리) 현장조사 모습

2) 현장 조사 범위

면	면담장소	인원	송전탑 예정지 현장방문
산외면	고정리	17명	101, 102, 108번
	희곡리	10명	
단장면	태릉리	11명	84, 85, 86, 89, 96, 99, 100번
	동화전마을	13명	
상동면	옥산리	16명	124번
	고답리	9명	
	금산리	10명	
	고정리	11명	
부북면	대항리	32명	128, 129번
	위양리	3명	
총계	10개 마을	132명	

1) 자세한 정보 공개 청구 목록은 118쪽 참고

3) 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범위

- 조사 일자: 2013년 6월 9일(일)
- 조사 내용: 일반 진료 및 건강상담(간이정신심리 검사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위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신체적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상담과 문진)
- 조사 참여 인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9인(정신과 의사 1인 포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 1인, 새물약사회 및 농민약국 소속 약사 3인 그리고 보건 의료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3인, 젊은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소속 학생 3인
- 조사 인원 : 4개 마을 300여명의 주민 중 81명(마을외 주민 2명 제외하고 79명 분석 시행)

*건강조사 범위

면	마을	인원
산외면	희곡리	25명
단장면	동화전	21명
상동면	옥산리	21명
부북면	대항리	12명
총인원		79명

(3) 활동 경과

구분	활동
2013년 5월 29일	밀양주민인권상황 논의를 위한 인권활동가 첫 모임
6월 3일	현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일정 조정을 위한 모임
6월 6일(목)부터 8일(토)	현장조사 및 현장 방문
6월 9일(일)	주민건강권 실태조사
6월 11일(화)	자료 취합 및 인권침해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모임
6월 20일(목)	인권보고서 작성 중간 점검 등 준비모임
6월 23일(일)	인권보고서 작성 중간 점검 등 준비모임
6월 26일(수)	인권보고서 최종본 검토 및 실무점검 모임
7월 3일(수)	오후1시 밀양인권보고서발표

3. 보고서 소개

I 장 들어가며(서론)에서는 조사 배경, 조사 과정(조사단 구성, 조사방법과 범위, 활동경과)를 담고 있다.

II 장 인권침해(본론)에서는 협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 마을 공동체 파괴, 공사과정에서 한전/시공사/용역의 인권침해,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III 장 결론에서는 밀양765kV사건이 담고 있는 인권문제의 결론, 정부와 한전 등에 요구하는 권고사항을 담았다.

이외에 참고자료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 개괄,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농민 권리 보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 중 ‘농민인권선언’, 마가렛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일부 발제)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주민 증언은 밀양인권침해조사단의 현장조사와 국회증언대회자료집(2012년 7월 23일) 등을 참고로 하였다. 위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인용 문구를 달지 않았다.

II . 인권침해

1. 협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협의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시공사 측이 송전탑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송전설비 건설에 반영되어야 할 이해당사자(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난하게 끌어왔다.

또한 한전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충분치 못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수차례 재개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야기하였다. 2012년 1월 16일에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새벽 4시경 산외면 보라마에 용역을 투입시켰고, 결국 당일 오후 마을 주민이었던 이치우 님이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한전은 불충분한 협의, 일방적인 공사 재개 및 용역 투입과 더불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여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송전탑 건설과 같은 국책개발 사업 시행 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개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경과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순적인 태도로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한전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협의체 논의 과정²⁾에서도 허위 자료 제공, 핵심 정보 누락, 정보 공개 기피 등 무성의한 태도로 되풀이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나아질 기미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번 장에서는 협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한전과 주민들 간 협의 과정 및 내용의 부당함 △한전의 공사강행 의지가 나타난 잦은 공사재개와 용역투입 △위압감 조성하는 고소/고발: 한전의 주민들 무더기 고소 및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고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전과 주민들 간 협의과정 및 내용의 부당함

1) 이해/피해당사자는 배제된 협의

한전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송전설비 건설사업 계획·평가·이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성영상,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등 과학적 조사·분석방법에 의존하여 경과지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이해/피해당사자를 배제한 부당한 처사이다.

2000년 8월 765kV 신규사업관련 설비계획이 확정된 후, 2002년 9월 송전선로 입지선정 실무협의회에서 후보 경과지가 선정되고, 2003년 10월 23일 송전선로 입지선정협의회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 경과지가 확정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양산, 밀양, 창녕의 주민 대표, 마을 대표, 종교단체와의 협의 내역(주민대표 452회, 마을대표 862회, 종교단체 22회)을 밝혔다.³⁾ 밀양만 하더라도 해당 다섯 개 면 마을 주민이 무려 2만 명이 넘는데, 한전이 공개한 민원협의 일지에 나온 횟수로만 보더라도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이해/피해당사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단지 횟수로만 치환될 수 없는 부분이다.

2) 민중의 소리,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 지지부진... 한전, 불성실한 태도 때문”, 2013. 6. 18.

<http://www.vop.co.kr/A00000646243.html>

3) 제311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의원 서면답변자료, “765kV 신고리-북경남 T/L 민원협의 일지”, 2012. 9, 75p~120p

더군다나 한전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대상과 합의한 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합의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였다. 한전은 정작 피해가 심각하여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정당한 방식으로 협의하지 않았고,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주거와 생존수단, 생활환경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다. 이렇듯 한전의 부당한 협의 방식은 마을 내, 마을 간 불신을 낳아 농촌에서 중요한 마을 공동체 파괴를 야기하였다.

OOO(산외면 금곡리)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측량(2004~2005년)등을 위해 낫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2)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설명회의 부당함

송전탑건설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존 전원개발촉진법⁴⁾과 환경영향평가법⁵⁾ 내 주민의견수렴 조항은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에 근거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행정계획 단계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내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개발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시켰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면별로 1회 진행하였고,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지만, 사업내용에 반영된 부분은 사실상 없었다.

2005년 7월 4일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밀양시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밀양시는 2005년 8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한전에 공고하였다. 그 결과 신고리~북경남⁶⁾을 연결하는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4) 2009년 1월 30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전문개정되었다. 2008년 5월 제출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에 따르면, 전원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개선하여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사업의 적기추진"하고자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한다고 밝힌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 제3항을 개정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종래 주민 의견수렴이 생략 가능했던 법률을 개정해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계획 단계 의견수렴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채수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등을 법률로 규정

6) 신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전기를 북경남 변전소까지 수송하기 위해 양산-청도-밀양-창녕을 관통하는 765kV 송전탑이 건설된다.

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밀양시 구간 주민설명회가 2005년 8월 23일~25일 동안 단장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에서 개최되었고 산외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면별 주민설명회 사진자료>



△단장면 주민설명회



△상동면 주민설명회



△부북면 대항2리 주민설명회



△청도면 주민설명회



한전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은 단장면 50명, 상동면 38명, 부북면 10명, 청도면 28명으로, 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면의 인구 21,069명 중 0.6%에 불과하였다.⁷⁾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가 피해/이해당사자인 철탑부지 및 선하지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정작 참여하지 못하였다.

<p>송○○(단장면 태룡리) 주민설명회는 2005년쯤 단장면에서 딱 한번 했고, 참여인원은 16명~18명 정도로 알고 있다.</p> <p>○○○(상동면 금산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이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입는 마을 주민들 중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33명만 있었다.</p> <p>○○○(산외면 희곡리) 주민설명회가 있는지도 몰랐다.</p>

요식행위로 그친 주민설명회 이후, 몇몇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⁸⁾ 주민들은 주민의견서를 통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공청회 개최⁹⁾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밝혔다. 한전은 주민의견서와 밀양시 환경관리과에서 한전사장에게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및 검토의견 통보’¹⁰⁾를 바탕으로 2006년 발행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부분에서 주민 및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밝힌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의견 수렴결과¹¹⁾**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밀양시] 부분면 노윤구	본인 소유의 임야 내 송전선 통과 불가함.	미반영(정부의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 경과지는 각종 시군자료를 분석하여 환경성, 민원발생 및 기술적 타당성 등의 관점에서 선정되었음)

7) 제316회 국회(임시회) 한국전력 서면답변서, 김제남 의원실, 2013. 6. 18.
 8) 2005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하고 9월 16일까지 마련된 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서 서면 제출
 9) 주민과의 협의 부재는 작년 6월 29일 울산 한국수력원자력교육원에서 개최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일반·방사선) 초안 공청회’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했던 밀양 주민들과 원전 반대 단체들은 공청회 참석을 거부당하였고, 결국 공청회는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및 검토의견 통보, 환경관리과, 2005. 9. 29.
 11) 환경영향평가, 2006, p.70~71, p.90~91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밀양시] 단장면 송길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철폐예정지를 마을에서 일정거리 (1km 이상) 이격 요구	부분반영(관련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
밀양시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단장면 고례, 범도, 산외면 회곡 박산, 괴곡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치 않고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설치 반대하고 있으며, 마을 별로 방문하여 경과지 재검토 및 협의가 요구됨.	부분반영 - 단장면고례, 범도리: 미반영(송전선로 계획노선을 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변경요구) - 산외면 회곡리 박산, 괴곡마을: 반영(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노선 변경)
	상동면 고정리(No.124)에서 금산리(No.125)를 경유하여 옥산리(No.126)으로 연결할 경우 송전탑(No.125)와 인접하여 상동역과 금호마을이 있어 주민의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되므로 고정리에서 밀양강을 횡단하여 경상북도와 경계인 철마산 능선을 따라 부북면 평밭마을 뒷산으로 선로변경 재검토 요망	미반영(밀양시 의견 요지대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할 경우 철마산 급경사지 통과에 따른 철폐 설치가 불가능하며, 부북면 평밭마을 뒷산을 경관이 수려한 화악산 주능선 급경사 부분으로 철폐설치가 불가한 지역임.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노선과 밀양시 의견요지가 달라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임.) * 주민의 요구사항 고정리에서 경북청도군 쪽으로 계획노선 변경 요구
	단장면, 산외면 등에 밤밭이 많으므로 항공방제에 지장이 없도록 송전선로 재검토 요망	반영 (대단위 밤나무 단지 항공방제에 지장이 없도록 경과지 변경)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반영 여부에서도 드러나듯이 한전은 철폐부지 조정에 대해 “관련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지만, 사실상 철폐부지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전은 ‘주민의견을 수렴’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괴리는 주민설명회가 한전의 사업 추진을 위한 걸치레에 불과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 한전의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 부재

이번 조사에서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이해/피해당사자들의 눈높이

에 맞게 제공되지 않았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하는지, 765kV 송전탑의 영향이 어떠한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는 왜 송전탑을 건설할 수 없는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삶의 기반, 공동체, 생활환경, 생산수단을 포기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전과 지식경제부는 송전탑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Exposure to extremely low frequency fields, Fact Sheet No.322)¹²⁾을 왜곡하여 인용해왔다. 이 보고에 따르면, 단기간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장기간 낮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아직 인체에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지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소통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할 것을 전제로,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단기노출 기준이 833mG이기 때문에 장기노출에도 적용할 경우 송전탑의 전자파는 무해하다고 홍보한다. 이처럼 한전은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일부 사실을 확대해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였다.

한전이 765kv 송전탑 건설의 당위성, 영향력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생산수단(재산)이 훼손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밀양 사태는 진정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농민인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the rural area, 2012)¹³⁾ 제2조 4항에는 “농민은 자신의 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서 정책구상, 의사결정, 이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¹⁴⁾고 밝히고 있다.

12)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번호 322, 2007. 6.

http://www.who.int/peh-emf/publications/facts/fs322_ELF_fields_korean.pdf

13) 유엔 인권이사회 제19차 세션,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HRC/19/75, 2012.2.24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108/03/PDF/G1210803.pdf?OpenElement>

하지만 한전은 2005년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송전탑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건강 및 주거, 토지, 환경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이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거부된 것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 부정당한 것이다.

○○○(상동면 고정리)

주민설명회는 면사무소에 잠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백지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나중에야 설명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동면 옥산리)

한전은 765kV 전자파가 우리 머리에 쓰는 드라이기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강조했다.

송○○(단장면 태룡리)

설명회 당시에는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전봇대 정도라고 생각했다. 국책사업으로 한전에서 진행한다는 얘기 말고는 제대로 설명된 게 없다.

송○○(단장면 태룡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2) 한전의 공사강행 의지가 나타난 잦은 공사 재개와 용역 투입

1) 충분한 협의 없이 재개된 공사가 불러일으킨 한전-주민 측의 갈등

2007년 11월 30일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 측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¹⁵⁾를 보면 한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총 십여 차례에 걸쳐 공사를 재개하였다. 2010년 8월 3일(갈등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작성하는 기간 도중)에 한전 시공사 측은 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시도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었다. 2011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이후에는 6차 공사를 추진하였다. 나아가 2011년 11월 한전이 9차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2년 1월에

14) Peasant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design, decision mak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any project, program or policy affecting their land and territories. (Article 2 Rights of Peasants 4)

15)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는 106쪽 참고

는 용역까지 투입하며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 비쳤다. 결국 이로 인해 이치우 님이 분신자살 하시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으나, 합의 기간이 끝난 직후인 6월에 다시 공사를 강행하였고 2013년 5월 20일에 4개면 6개 지역 공사가 재개되면서 주민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① 갈등조정위원회 직후, 한전 측의 일방적인 현장사무소 설치

2010년 8월 3일,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일대에 시공업체인 D산업은 현장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자 주민 200여명이 몰려와 공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대처 이후, 양측은 현장 사무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

- ◎주민 대책위 입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제도개선추진위의 관련법 개정과 보상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 ◎한전 입장: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만 설치 하려는 것'인데 주민들이 달려왔다.

이 사건은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에서 도출한 합의사항이 합의문으로 명시되기 이전이자,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발족(2010년 11월 26일)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다. 결국 한전은 제도개선추진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공사 강행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② 보상협의 협상 결렬 이후 일방적 용역 투입은 이치우 님 분신으로 귀결됨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실련 중재 보상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회의는 10월 말 협상이 결렬되고 11월부터 공사가 다시 강행되었다. 2012년 1월 16일 오전 4시경 한전 소속 감독관·시공사인 동양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 1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이 밀양 산외면 회곡리 보라마을 주민이 막아선 곳을 뚫고 들어와 공사를 강행하였다. 한전은 용역들을 고용해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하게 위해 몸으로 막기도 하였다. 이날 오후 이치우 님은 마을회관 쪽에서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와서, 마을 다리 입구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2009년 갈등조정위원회부터 제도개선추진위원회, 경실련의 중재로 보상협의회까지 열렸지만 회의의 진전이 크지 않았고 더욱이 협상이나 협의가 한전과 주민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직후에도 한전은 공사를 재개하고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런 행위는 진정한 대화를 이어가는데 큰 방해물이 되었다.

(3) 위압감 조성하는 고소/고발: 주민들 무더기 고소 및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고소

1) 한전의 주민들 무더기 고소

2012년 9월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밀양현안보고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765kV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총 39건(한전 15건, 시공사 24건)을 고소했으며, 고소 대상이 210명(취하 포함)이상으로, 단일 국책사업으로는 최악의 고소 고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2012년 이치우 님의 분신 사건 이후 모든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장례식이 끝나자 밀양주민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3명에게는 하루 1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¹⁶⁾ 등 고소·고발을 다시 시작하였다. 업무방해나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된 주민도 있었다.

주민들은 한전과 시공사가 공사를 막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주민을 고소·고발하고 이와 함께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데에 있어 심한 위축감과 위압감을 받았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2) 밀양시장과 창녕군수에 대한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액 청구로 위압감 줌

한전은 밀양시와 창녕군이 2009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에 대해 공고 및 열람’을 의뢰받고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아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액으로 20억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밀양시에서 토지공고 및 열람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주민 측의 반대기가 그만큼 격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밀양시장은 한전 측과 함께 계속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참석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한전 측의 직무유기 고소는 갈등조정위와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진행과 관계없이 공사를 하루빨리 강행하겠다는 의지이다.

한전은 갈등조정위와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고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압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전은 이처럼 충분한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해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간 것이다.

16) 부산일보, “밀양송전탑사태 고소·고발 춤춘다”, 2012. 9. 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907000064>

2.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사회는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3.7세일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에서도 70세 이상인 주민들은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농민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이 65세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고령에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누가 언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에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인근에 건설되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토지의 가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 때문에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소액의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그 외 주민들은 개인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더 이상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된 후 개별 보상 범위 밖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토지 자산 가치도 이미 ‘0’이 되었다. 매매는 물론 담보대출조차 불가능하다. 노후연금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농민들의 노후연금은 사실상 토지뿐인데, 현 상황에서 송전선 주변의 주민들은 일할 능력을 상실한다면 자신의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송전탑 건설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에게 땅의 가치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으로 논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땅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그리고 죽음까지를 아우르는 가치를 담고 있다. 그들이 가진 전부이다.

이 장에서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송전선 주변 토지 가치 폭락, △토지 매매 및 담보대출 불가에 따른 생존권 침해, △송전선 주변 지역 영농활동제한에 따른 소득 피해, △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향후 개발 가치 상실, △전자파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 피해 등을 살핀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한전 측의 보상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논하기 위해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보상의 내용과 그 사례, △한전이 제시한 법외 보상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1)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관련 재산상 피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관련 재산상 피해는 '1) 송전선 주변 토지 가치 폭락', '2) 토지 매매 및 담보대출 불가에 따른 생존권 침해', '3) 송전선 주변 지역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 피해', '4) 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5) 향후 개발 가치 상실', '6) 전자파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 피해' 로 나눌 수 있다.

1) 송전선로 주변 토지 가치 폭락

밀양 지역에서는 송전탑 건설부지 및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전반에 걸쳐 토지 가치가 폭락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걸쳐서 토지가 가치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주변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부지 매입비 그리고 선하지 사용료 개념으로 개인에게 소액의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그 외 토지 가치 폭락으로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한 푼도 없다.

주민들 대부분이 땅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가치의 폭락은 주민들이 이제껏 쌓아온 거의 모든 자산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에게 노인연금과도 같은 연락을 하는 토지 가치의 폭락은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다.

백○○(밀양시/57)

2004년부터 상동면 소재 상동역 광장에서 부동산업을 했으나 송전탑 이후 장사가 안돼 2011년 4월에 밀양시내 가까운 곳(상동면과 산외면과 밀양시내 경계)으로 가게를 옮겼다. 예전에 상동역 광장에는 입지조건 때문에 부동산가게가 10여군데가 넘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2군데 정도가 문을 열어두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다.

2004년, 2005년 당시 밀양IC에서 15분 정도 거리의 상동면 마을들의 토지거래가 잘 되었다.

송전탑공사 공고가 난 이후부터는 송전탑이 지나가는 주변마을(고정리 모정마을, 고정마을, 도곡마을)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2011년 가계를 옮기기 전까지의 2~3년 동안 내가 성사시킨 거래가 딱 1건,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격으로 급매가 나온 걸 거래 성사시켰다. 땅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오면 가장 먼저 송전탑이 지나가는가를 묻고 송전탑 반경 1~2km 안이면 현장답사조차 하지 않는다.

예전엔 청도가 밀양 가격의 절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추월당했다. 고정마을이 예전에는 평당 3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12만 원 정도 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농협에 땅을 담보로 대출을 냈다가 갚지 못하자 경매로 넘어갔는데, 송전탑 주변 토지가 거래되지 않아 시세가 나오지 않으니 공시지가 수준으로 경매해서 싼 가격에 땅을 날리는 경우도 주변에서 더러 보았다.

박○○(상동면 금산리/50)

765송전선로 선하지와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폭락하고 송전선로 2km내 토지와 주택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갑니다. 한전이 송전 선로를 건설하려면 2km내 모든 토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선하지가 한정 되지 않는 제한 없는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지에서 들어오면 부동산에서 저쪽에 철탑이 들어선다하면 두 번 물어보지 않고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 독한 농협에서도 근저당 설정과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전에서는 송전탑을 세우려합니다. 한전에서도 토지가 하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뺏으려 합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65송전탑을 철회하여 주시고 주민들 원성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동면 고정리/84)

땅값이 떨어져서 매매가 안 되고, 대출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농사를 지을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서 땅을 그냥 버리게 생겼다. 아무런 상의 없이 땅값을 정했고, 평당 1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평당 1만 4천 원꼴로만 쳐준다고 하고, 선하에 가까운 곳에만 값을 쳐준다고 한다.

이○○(산외면 희곡리/67)

본인 소유 재산은 단독 슬라브 주택(약 200㎡) 1동과 농지(약 1650㎡, 전) 1필지입니다. 외지인으로부터 전원생활 적합지로 관심과 각광을 받은 2006~2008년도 당시엔 약 4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으나 765kV 송전탑 이슈 후 철탑 경과지로 알려진 3~4년 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굳이 평가한다면 현재는 2억 원이라고 할까요. 즉 내 재산 가치는 반 토막 난 상태입니다.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상동면 옥산리/74)

765kV 송전탑, 송전선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재산은 무용지물이 된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100일 이상 소요된다. 운영 기금도 경비도 내 개인이 50만 원 이상 썼다.

이○○(상동면 도곡리)

765송전탑 하지 마세요. 부모님 모은 재산 765 방해하지 마세요. 시골은 땅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송전탑 때문에 살 수 없다.

김○○(상동면 고정리/77)

송전탑 안 좋은 건 정부도 알고 있을 거다. 송전탑 지나간다 소리 안하면 부동산 매매해도 불법이 된다. 미리 말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계속해서 정부가 재산을 압류했다. 후손들에게 땅 한 평 못주고, 우리야 살면 몇 년 살겠냐. 젊은 사람 누가 여기 와서 살겠냐. 이곳은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 경기도 양평군수가 산 위에 뺑 돌려서 주민 피해 없게 하도록 해서 그렇게 건설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하겠냐.

장○○(상동면 고정리/78)

밭 가운데로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보상으로 700만 원만 공탁되었다. 이제 자식에게 남겨줄 땅도 없다. 협의 과정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너무 억울하다.

박○○(상동면 고정리/82)

밭에 철타서고 전선이 지나가니 이제 농사는 못 짓는다. 원래 무덤자리를 일구어서 밭으로 만들었는데 밭은 좋은데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액이 너무 적다. 또 감나무가 한 150주가 들어서 있는데 땅값보다 나무 값이 더 나갈 텐데 나무 값은 한 푼도 안 준다.

2) 토지 매매 및 담보대출 불가에 따른 생존권 침해

송전선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이다. 이 분들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땅’만이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다.

현재 송전선 주변 마을 일대 모든 토지 담보대출 및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매매하려고 하다가 계약 파기한 사례, 토지 담보대출을 거절당한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 그로 인해 토지에 자산 가치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농촌 지역에서 노후 연금의 성격을 갖는 토지의 자산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해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인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향후 영농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졌다.

현 상황은 한평생을 농촌에서 땅만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며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백○○(상동면 옥수리/60)

내가 직접 농협에서 갔는데 상동 농협이 아니고 밀양농협에 갔는데 내일 연락드리겠다는 답을 받고 왔는데 제가 가진 땅도 평당 20만 원이었는데 그 이튿날 답이 금액 산정이 안 된다고. 대출이 아예 불가죠. 실질적으로 친구가 부동산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길만 건너면 차를 돌려서 안 들어오려고 한다.

전○○(부북면 대항리/55)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 단순한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송○○(단장면 태룡리)

매매가 안 되죠. 땅을 내어놓아도 매매가 안 된다. 우리 집 위에도 송전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땅을 사서 손해를 봤다. 계약은 하였으나, 중도금도 안주고,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한다. 매매 자체가 안 된다.

박○○(상동면 도곡리/55)

송전탑 건설 중단해 주십시오. 재산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후에 연금제도 빈약하여, 이 토지나 팔아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송전탑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재산(토지)값이 하락하여 노후가 걱정이다.

손○○(북부면 위양리/78)

전에는 손자들 등록금을 땅을 조금씩 팔아서 보내줬다. 이번에도 군대 졸업한 손자 등록금 때문에 내놓았는데 이전에 13만 원에 팔았던 것을 7~8만 원이라고 해서 그럼 됐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서 등록금 보태 주었다. 내놓아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안 나타난다.

서○○(상동면 금산리/64)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러 오는 사람은 간혹 있으나 철탑 부지 얘기를 들으면 매매 포기한다. 따라서 일군 땅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황폐화 시킨다는 것이 역울하다. 충분한 설명과 보상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르신과 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산외면 희곡리)

송전탑이 들어서기로 한 다음에 철탑부지는 당연히 대출이 안 되었고, 선하지는 당시에 대출 신청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작년에 철탑부지에서 500m 떨어진 곳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불가라고 했다. 철탑부지는 아예 안 되는 거였고, 이젠 500m가 족히 떨어진 곳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되었다.

김○○(상동면 옥수리)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철탑 있다고 하면서 아예 부동산에서 이 근처로 안 와. 사러 오지를 않아. 거래 자체가 안 돼.

정○○(북부면 위양리/72)

철탑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매매를 하려고 내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김○○(상동면 고정리/77)

부산에서 살다가 이곳에 정착한지 11년 되었다. 30여 년 전 노후를 목적으로 땅을 사놓았다. 과수원 약 4천3백 평, 임야포함 전체 약 2만평 소유하고 있다. 120호와 121호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가 본인 소유의 임야 1천 평을 지날 예정이며 선하지 보상가는 평당 9천여 원 정도이다. 그러나 김영택은 자기 땅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가 2009년 보상금 받아가라는 통지문을 보고서야 송전탑 공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2012년 3월 토지 강제수용(일시사용)과 보상금 공탁을 내용으로 한 법원통지문이 날아왔다.

현재 토지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10년 전 10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팔고 있다가 몇 년 지난 후 팔려고 내놨으나 송전탑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 퇴직 후 17년이 지나 노동이 힘들어지면서 과수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갈수록 생계가 힘들어지자, 김○○은 땅을 부동산에 내놓으며 매매가격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했으나, 땅을 보러 온 사람들마다 등기를 떼보고는 매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박○○(상동면 옥산리/54)

765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날부터 모든 재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기관에 담보설정도 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아예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이○○(상동면 옥산리/77)

토지를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팔리지도 않고, 송전탑이 뒷산으로 간다고 하면 아예 예! 하고는 가버린다. 그렇다고 대출(담도 대출)도 안 되고 전혀 재산의 가치가 없어졌다.

하○○(상동면 고정리/70)

선로 안에 500평이 있는데 평당 밭 20~30만 원, 논 평당 15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 거래되지 않는다.

박○○(상동면 도곡리/49)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져라. 대출하기 힘들다. 대출해주지 않는다.

김○○(상동면 고정리/74)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 지역에 765KV 송전 선로 건설로 인하여 전자파가 얼마나 무해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누가 이런 곳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부동산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답을 내놓아도 매매가 전혀 안되고 농협에서 담보 대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백○○(상동면 옥수리/60)

2005년 5월 여수마을에 집을 갖고 있는 외지인(부산)이 백○○의 땅 약 1천평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일 이틀 전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지인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천○○(상동면 고답리/73)

담보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이 있다. 땅을 팔려고 그러면 송전탑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물어본다고 한다. 거래 자체가 안 된다. 송전탑 건설 계획이 알려지기 전에는 도시 사람들이 살려고 땅을 사고 했는데 계획이 알려진 이후(2005년경)부터는 거래가 끊겼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송전탑 이야기를 안 했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한다.

NH **간이감정평가표(일반물건용)**

계원	책임자	책임자	사무소장	수주처별표 사무소장확인

2010년04월12일 작성 감정번호 : 3000762955 가격시점 : 2010년04월12일 작성지 (인)

평가금액	일억일천일백이십일만팔천원정 (₩ 111,218,000원)		
채무자	이상우	담보제공자	이상우

1. 평가내역

기호	지번	지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		평가금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1	506	담	농림지역	2,919.20	2,919.20	19,040	55,581,000	
2	507	담	농림지역	1,940.80	1,940.80	19,040	36,952,000	
3	508	담	농림지역	981.40	981.40	19,040	18,685,000	
합계		토지 건물					111,218,000	

2. 가격결정에 관한 의견

<<토지>>

기호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	이용상황	공시지가
1	대상토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06	담	농림지역	담	0 원/㎡
	비교표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44	담	농림지역	담	19,000 원/㎡
	지가변동율	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지역 / 2009. 12월 / 0.22%				
	가격결정절차	$19,000 \times (1 + 0.0022) \times (100/100) \times (100/100) \times (100/100)$				
	가격결정요인	765KV 송전선로 예정지로 비교표준지가를 적용함.				
2	대상토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07	담	농림지역	담	0 원/㎡
	비교표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44	담	농림지역	담	19,000 원/㎡
	지가변동율	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지역 / 2009. 12월 / 0.22%				
	가격결정절차	$19,000 \times (1 + 0.0022) \times (100/100) \times (100/100) \times (100/100)$				
	가격결정요인	765KV 송전선로 예정지로 비교표준지가를 적용함.				
3	대상토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08	담	농림지역	담	0 원/㎡
	비교표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544	담	농림지역	담	19,000 원/㎡
	지가변동율	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지역 / 2009. 12월 / 0.22%				
	가격결정절차	$19,000 \times (1 + 0.0022) \times (100/100) \times (100/100) \times (100/100)$				
	가격결정요인	765KV 송전선로 예정지로 비교표준지가를 적용함.				

산동농협 **본인 확인용은 76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로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담보대출을 반려합니다.** 페이지 1/3 출력일시: 2010-04-12 14:12:30

△산외면 희곡리 주민 이○○(73세, 故 이치우 어르신 동생) 씨가 농협 대출 신청하였다가 반려당한 서류이다. “본건 담보물은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로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담보대출을 반려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3) 송전선 주변 지역 영농활동제한에 따른 소득 피해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분할된 밤밭의 경우 항공방제가 불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765kv 송전탑 주변에서 장시간 농사일

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농업 및 버섯, 유기농이 불가능하여 농가 소득원이 상실될 것이다. 유기농지 그리고 과일 농사 등은 현재 토지 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순히 선하지 등 현금보상만으로 해결 안 된다. 게다가 임차농의 경우 보상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해당 경작지에 대한 항공살포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의 변화에 따른 보상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확정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단장면 사연리/62)

땅값만 계산했을 경우 농장, 집 등 7억 원인데 현재 전혀 팔리지 않는다. 만약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시가의 70~80프로 가능한데 지금처럼 대출을 못 받으면 한 해 농사 시작이 어렵다.

김○○(산외면 희곡리)

765송전탑이 건설된 강원도 평창, 예산 효자리, 고창에 조사를 갔었다. 요즘엔 농촌에서 농사 뿐 아니라 전원생활이나 목장을 짓기도 하는데 전혀 매매가 없었다. 돼지우리나 가스 관련 시설만 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다.

하○○(상동면 고정리/73)

논 800평 농사짓는데 그 가운데로 송전선이 지나간다. 3m 폭으로. 그러면 양쪽으로도 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건데 600만 원 보상한다고 공탁 걸어놓았다.

양○○(단장면 사연리/72)

임야 6천7백 평에 30년 동안 밤나무 농사를 지어왔다. 송전탑 97호와 98호를 잇는 송전선로가 밤 밭의 일부를 지나가면서 송전선로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면 밤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연매출 6~7백만 원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소득원이어서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걱정이다.

나와 밀양시는 2005년부터 한전에 항공방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한전은 200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함'이라고 거짓으로 기술했다. 이후 양○○ 원고 측이 낸 소송에서 한전 피고 측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소송은 원고 패소를 끝냈다.

백○○(상동면 옥수리/60)

여기는 감이 주업이고, 밭이 부업입니다. 송전 케이블은 피복이 없고 철이 그대로 지나가는데 철이 여섯 가닥이 한 선이에요. 한 선이 3cm 여섯 개면 20cm 되는데 한전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전선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90도가 맞는데 출력을 3호기를 100을 올리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온도가 90도가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감에 맞혀 떨어지는 물이 감나무에 다 떨어집니다. 감농사에 해가 되는 거예요. 90도 온도의 물 맞아서 감농사가 안 된다.

4) 송전 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식당의 경우 매매 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한 추가 담보대출 불가능하다. 게다가 식당과 송전선까지의 거리가 40m 밖에 되지 않아서 송전탑 건설시 손님이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동면 고정리/65), 정○○(상동면 금산리/35)

121호와 120호를 잇는 송전선로가 식당(산천농원) 옆으로 지나간다. 한전이 밝힌 송전선로와 식당과의 이격거리는 80m이나 2010년경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도상으로 측정한 거리는 40m이다. 본인과 아들내외 3명의 손자가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전자파 피해에 대한 공포가 크다.

23년 동안 이곳에서 식당을 해오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식당에 재투자했다. 송전탑 공사가 기정사실화되기 전 4억 5천만 원에 식당을 매입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지금은 1억 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 절망적이다.

특히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식당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 자식들의 생계가 가장 걱정된다. 단골손님들은 앞으로 송전탑이 서면 식당에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선로가 건설 된다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 할 수가 없으며 노모와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 갈 수가 없을 걸로 본다.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가게 매매 및 임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향후 개발 가치 상실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사람들이 이주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송전탑이 건설되어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송전선로의 영향으로 이 지역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생긴다면 이런 개발 가치는 모두 없어진다. 지금도 송전탑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원주택단지나 연수원 등으로 지역을 개발하려 했던 시도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김○○(산외면 희곡리/72)

송전탑 101호가 서는 승학산 기슭에 본인 소유의 집과 전원주택택지가 있다. 송전선로로부터 이격거리는 100여 m 안팎인데, 전원주택택지를 매매하려고 했으나 송전탑이 선다는 사실을 안 매입자가 계약을 파기했다.

김○○(상동면 고정리)

송전탑 건설로 인해 땅 가치가 0원이 되어서 땅 거래가 되지 않는다. 원래 건설되기로 하였던 20 가구의 집이 건설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집 건설이 취소 또는 보류됨에 따라 인구 유입에 있어서 방해받았다.

박○○(상동면 옥산리/76)

송전탑이 설치되면 송전탑 주변의 개발은 중단되고 부동산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동면 옥산리/66)

개발 중단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했다.

정○○(상동면 고답리/73)

진해 사람이(이○○) 산에 연수원 지으려고 땅 사고 집 짓고 살았다. 그런데 송전탑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농성장에 몇 번 나와 보고는 다 포기하고 양산으로 떠났다.

6) 전자파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 피해

765kV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이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전은 피해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논리만을 펴고 있다. 그러나 765kV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을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송전선 아래에서 생활하다시피 농사를 짓는 하우스 농의 경우 전자파 우려가 심각하며 그에 따라 인부들조차 오지 않아 재산과 생계가 위태롭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주민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전자파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농산물 판매나 인부들을 고용해 영농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자파 위험에 대해 과학적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위험을 규제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송전탑을 건설시 전자파를 감소시키는 모든 대안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전선로를 계획한다. 그러나 지금 한전은 아무런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유○○(상동면 옥산리/59)

121호 송전탑부지 바로 옆 토지 약 3천 평을 임대해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다.(하우스 1동 대략 3천5백만 원의 비용, 연매출 약 1억 5천만 원) 이곳에서 10년 동안 친환경 농사로 땅을 조성했고 이제 유기농 4~5년차에 접어들었다.

임대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은 하나도 없다. 121호 송전탑과 120호 송전탑 사이를 잇는 송전선로가 비닐하우스 바로 위를 지나간다. 인부들도 일하러 오기를 꺼려할 것이라 걱정이다.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기 때문에 전자파 우려, 전자파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해 하우스에 그늘이 지는 문제, 비가 오면 선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하중 때문에 하우스를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라 걱정이다. 게다가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피해가 많다. 지표수 6m70cm 공사부지에서 땅을 8m를 파는 바람에 비닐하우스 인근 물줄기가 바뀌었다. 또 공사업체에서 배수관을 따로 설치해 비가 오면 물빠짐이 쉽지 않다. 또 공사부지를 방치하면서 해충이 들끓어 비닐하우스의 작물로 피해가 갈까봐 경계하고 있다.

765kV 송전선로 진행과정에서 2011년도 문화재 발굴 사업의 일환인 지표조사과정에서 굴삭기로 6m이상 지하로 내려가면 물길이가 바뀌니까 조심해 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만 전선(한전) 측은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바 지표수인 농업용수의 물줄기를 건드려 양수기물이 안 나오고 해서 다른 곳을 선정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다.

진○○(부북면 위양리/66)

본인이 소유한 임야 7만평 중 약 1천 평이 송전탑(128호)과 송전선로에 포함되면서 총 보상금 1천2백만 원가량의 보상금 수령 통지문이 날아왔다. 보상금 수령을 계속 거부하자 강제수용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송전탑에서 100m 인근에 본인이 직접 송이버섯농사(연매출 약 6~7백만 원)를 짓고 있는데 전자파로 인해 송이단지가 없어질 것이 걱정된다.

하○○(상동면 고정리/73)

강한 전자파는 벌이 방향감각을 잃는다. 감농사가 우리 주 소득원인데 이게 다 무너진다. 벌이 안다니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 공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벌게 없다. 여기 온 사람은 다 감농사를 하고 있고 모두 직접 선하지에 걸려 있다.

장○○(상동면 옥산리/68)

송전탑과 논이 거리가 60m 밖에 되지 않고, 모든 작물(딸기, 고추) 농산물의 피해 또는 논이 시세의 피해를 입었다. 모든 피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이○○(산외면 희곡리/70)

본인 소유의 논 2천 평 중 약 3백 평(102호 송전탑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6천만 원(선하지 보상 제외한 금액)이 나온다. 전자파 때문에 나머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매매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전의 보상 기준(평당 20만 원)에 비추어본다면 논 전체는 시가 4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다.

(2) 터무니없는 보상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밀양주민들이 입게 되는 손실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형태를 띤다. 거대한 송전탑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로 초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사업이고 심지어는 삶의 터전과 생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보상내용과 사업자인 한전이 제시한 보상책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삶’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하루속히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따름이다. 송전선로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내용과 그 터무니없음에 관하여 살핀 다음, 한전이 제시한 법외 보상제안의 타당성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보상의 내용과 그 사례

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¹⁷⁾을 지급하여야 한다.¹⁸⁾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 그 보상 내

용을 정한 법률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이다. 물론 두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송전탑 부지 외에 공익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사업의 보상내용은 다른 공익사업보다도 보상의 범위가 훨씬 좁고 보상액도 매우 적다.

② 전술한 바와 같이 송전탑 부지의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준용하는 공익토지보상법에 의한다. 공익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송전탑 부지가 기존에 가졌던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닌다. 이는 공익사업 일반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이다.

③ 더욱 심각한 것은 송전선 주변 토지(선하지)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내용이 주민들이 입는 손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하지의 강제사용에 따른 보상도 전원개발촉진법 및 공익토지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보상의 범위와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송전선 설치에 따른 선하지 사용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까지¹⁷⁾에 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 일대 대부분의 토지들은 매매가 중단되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대출 가능액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한다. 토지의 가치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하지 주변의 토지소유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송전선 부근 3미터 토지만 보상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구분지상권 상당의 사용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약 25%만 책정된다.

④ 광범위하고 다양한 손실에 비하여 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원개발 사업을 선(線)적 사업으로 파악하다 보니 면(面)적 사업에 비하여 보상의 범위와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송전탑부지와 선하지에 대한 약간의 보상만 이루어지고 그 밖

17) 현재 2001. 4. 26. 2000헌바31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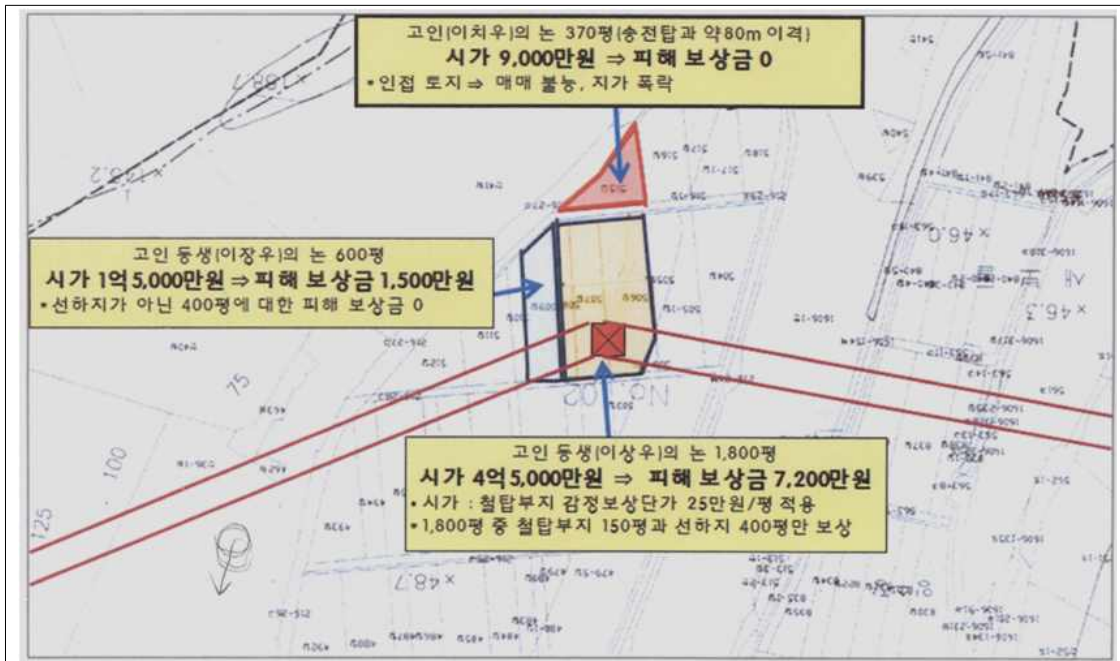
18) 헌법 제23조 제3항

19)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에 잔여지 보상²⁰), 건축물 등 물건(수목 또는 과수 포함)에 대한 보상²¹), 영업손실보상²²), 간접손실보상²³), 이주대책²⁴ 등 공익토지 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상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상액의 허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는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이상우 어르신 3형제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내용이다.



- 송전탑과 불과 80m 이격된 논 370평의 시가는 9,000만 원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은 0원이다. 게다가 송전탑 인접 토지로 담보대출도 매매도 불가능하다.
- 논 600평 중 200평만 선하지에 포함되었다. 논 시가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피해 보상금은 1,5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도 담보대출도 매매도 불가능하다.
- 논 1,800평 중 송전탑부지로 150평, 선하지로 400평이 포함되었다. 논 시가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피해보상금은 7,2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 결국, 어르신 3형제의 시가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실제 보상금은 8700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⑥ 밀양주민들에게 토지는 지금까지 그리고 남은 일생동안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밀양주민들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정당한 보상’이라는 말부터가 폭력일 수 있겠

20) 공익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21) 공익토지보상법 제75조
 22) 공익토지보상법 제77조
 23) 공익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24)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공익토지보상법 제78조

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는 토지가 밀양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간단한 생각이 얼마나 무례한 발상인지를 보여준다.



위의 도면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사례인 단장면 사연리의 양상용(72세) 어르신은 밤나무단지와 그 위를 지나가는 송전선(가운데 직선)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탄원서(아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부적절함을 논하기에 앞서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탄 원 서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에서 30년 전부터 밤나무 농사를 지어 생활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가난하고 형제가 많은(10형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해 한번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돈 한 푼 없이 결혼한 저는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짓고, 날 품 팔아가면서 겨

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땅이 그렇게 갖고 싶어 저녁마다 죽 끓여 먹고, 버려진 땅에 고구마를 심어서 삶아먹고, 칩부리나 속을 뜯어 삶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조금 모아지자 저는 내 땅이 더욱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많아 버려진 산을 썩 값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겨우 땅을 산 저희 두 부부는 내 땅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밥만 먹고 나면 그 곳에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루 종일 일을 하여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괄이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톱과 낫으로 잡목을 베어내어 모두 밤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밤나무 단지(No.97 철탐주변 밤나무 단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밤 수확으로 버는 돈은 일 년에 7~8백만 원 정도이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저희 부부는 그 돈으로 1년을 먹고 산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제 제 나이가 72살입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어 밤농사를 지어 내 힘으로 살아 갈수 있습니다. 3년 전에 1억 5000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미루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 땅에서 내 힘으로 밤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힘이 없어 밤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때 땅을 팔아서 쓸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고,그리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겁니다.

그런데 한전은 내 땅위로 초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나무 단지는 항공방제를 할 수 없어 밤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벌써 산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상금 154만 원을 찾아가라는데... 그 때 저는 "154만 원 필요 없다. 154만 원 안 받을 테니 우리 부부 늙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 달라. 우리 그 땅 없으면 굶어 죽는다." 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한 푼 없어도 겁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힘도 약해져서 앞으로 돈 한 푼 없이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 집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의 밤 산주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겁이 덜컥 납니다. 혹시 한전에서 철탐공사를 시작하는가 싶어 늘 불안합니다. 우리 부부가 손톱이 몽그러져가면서 일구어낸 내 땅입니다. 내 몸과

같고 내 자식과 같은 땅입니다. 값을 제대로 받고 팔아도 속이 쓰릴 판인데 한전은 겨우 154만 원을 주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빼앗기면 우리 부부는 원통하고 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글을 쓸 줄 몰라 지금 이웃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씁니다. 법도 모르고 어떻게 소송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못 배워 무식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판사님 저희 늙은이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땅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꼭 안 된다면, 송전선을 내 땅위에 꼭 건설 하여야 한다면...

나라에서라도 우리 부부를 먹여 살리도록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밥만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라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664번지 양 상 용

2) 한전이 제시한 법외 보상안 등에 대한 검토

① 한전이 2013년 4월 발표한 「밀양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이하 ‘특별지원안’이라 한다)은 총 16항의 지원안을 담고 있다.

*한전이 발표한 특별지원안의 주요 내용

순번	표제	내용
1	지속적인 지역지원사업 시행	송전탑 설비 존속기간 동안 매년 일정금액 지원 - 주민대표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 지원 - 전기요금 지원
2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상향 지원	현행 125억 원에서 40억 추가 지원
3	선로 주변지역 토지 가치하락 보상	특별법 제정하여 선하지 보상범위 확대 및 잔여지 보상

4	빛고을 밀양의 태양 빛을 활용한 '태양광 valley' 사업	송전선로 선하지의 토지 형질변경 (임야→잡종지)을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임대로 인한 임대료 수입 -태양광 사업 실적에 따른 추가 이익 배당
5	선로인근 펜션 임차	송전선로 중심 1km 내 지역에 위치한 펜션 장기 임차 -동계 및 하계 전력그룹사 직원 체련장으로 활용
6	선로 인접지역 주택 매입(이주)	송전선로 인접 지역에 대한 주택 매입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매입, 이사비 지원
7	선로 인접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매입지역 외 인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8	상동면 구간 철탑 1기 취소 및 경과지 변경 검토	옥산, 여수, 금호, 금곡 등 4개 마을 조망권 철탑 및 집단 주거지 부근 송전탑 취소 및 변경 - 121호 : 취소 - 119~125호 : 변경 검토
9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	농산물 공동 판매시설 신축	마을주민들이 지방도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영업하던 판매시설을 직거래장 공동판매장 신축 후 이전(5개 면)
11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 지역 보상	단장면 동화마을 등 11개소에 대한 유아등(해충 유인기) 설치 등 보상
12	특산물 판로 지원	한전 본사, 지역본부, 개발 사업소와 1본부+1촌 사업 자매결연 후 매월 1회 지역별 판매 행사 지원
13	설비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인턴채용 우대	밀양 지역 거주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채용우대형 인턴 선발시 10~20% 가점 부여
14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검토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근 기설 변전소 전여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신축
15	지역 주민 건강 검진	한전 병원을 활용한 건강검진 지원
16	증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 시 밀양지원 최우선 검토	정부시책에 따른 지중화 추진 시 밀양 지역 최우선 검토

하지만 이 특별지원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② 우선 특별지원안은 금전으로 주민 반대를 무마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일환이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한전이 진정으로 보상 외의 수단으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절차와 방식을 보상액의 증액여부 검토 이전에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자신들이 제출한 특별지원안의 맨 위를 ‘마을에 매년 몇 억씩을 뿌리겠다.’는 돈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고 지원의 형식과 절차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지원금 지급은 주민 간 불화와 반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원방식이 송전탑 혹은 송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범위를 기계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급작스러운 금원의 유입은 돈의 사용방향, 배분 방식 등으로 주민 간·마을 간 대립을 발생시킨다. 이미 일부 마을에 송전탑지지 대가로 유입된 돈 문제로 인하여 주민 간 불화와 반목이 발생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송전탑 반대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단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지역에 돈을 뿌려주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한국전력의 특별지원안은 마을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③ 또한 특별지원안은 그 재원 및 그 운용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점을 노출한다.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책사업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이루어지는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근거한다.²⁵⁾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전기사업법 제49조). 그리고 이 기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조성된다(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50조). 즉 국민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전기요금의 고지서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넘는 국민 모두의 요구가 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금운용은 운용자체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마저 위 특별지원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²⁶⁾.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처 간 사전조율도 없이 특별지원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전력

25)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26) 한겨레, “‘밀양송전탑 보상안’ 기재부가 반대...줄속 추진”, 2013. 5. 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302.html

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전력사업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해 전력의 공공적 기능 유지, 전력 분야의 연구개발 확대, 시장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공익적 기능위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조성자인 국민의 의사로서, 한전의 부당한 사업 진행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④ 다음으로 특별지원안 자체도 사업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안들이 많다. 첫 번째, 선하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을 보면, 선하지의 대부분이 임야이고 태양광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에 대한 벌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환경파괴를 야기한다. 두 번째,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의 신축을 보면, 공동생산·공동유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매시설만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공동판매시설(각 면당 대지 300평, 주차장 200평 규모의 건물 신축)이 자리 잡게 되면 기존의 전통상권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설비주변지역의 주민 및 그 자녀를 한전의 채용우대형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안과 관련, 이 우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상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50~80대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자녀가 인턴에 지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 실효성이 매우 낮다. 네 번째,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신설안도 제시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화양변전소 부지는 현재 한전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밀양 주민 및 그 자녀를 위한 재경기숙사의 건설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지중화 추진 시 밀양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안도 믿기 어렵다. 765kV 송전선의 지중화가 회의적이라는 한전의 기본 주장과 중장기적으로 지중화를 검토한다는 특별지원안이 모순되고, 지중화가 가능한 345kV의 지중화 사업도 인구밀집지역에서조차 6~7년 이상이 소요되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송전선 지중화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 765kV 송전탑의 최우선 지중화 검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공(空)약일 뿐이다.

*특별지원안의 주요 문제점

표제	문제점
빛고을 밀양의 태양 빛을 활용한 '태양광 valley' 사업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선하지 지역 임야를 벌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발생 불가피
선로인근 펜션 임차	마을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 없음
농산물 공동 판매시설 신축	공동생산, 유통에 대한 고민 없는 제안 지역 전통상권의 침해 야기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지역 보상	유아등(해충 유인기)는 항공방제의 보완책이 될 뿐 대안이 될 수 없음
설비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인턴채용 우대	-설비 주변지역 주민 중 인턴지원자는 극히 미비함 -마을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 없음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검토	제안된 부지는 현재 한전 사택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 실현가능성 의문
중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 시 밀양 지역 최우선 검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송전탑 지중화도 7년 이상 소요되고 있음. -765kV 송전탑의 지중화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한전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밀양 지역을 최우선 지중화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음.

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면 한전의 특별지원안은 보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이른바 여론환기용 수단에 불과하다. 제시되는 지원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졸속적이고 긴급하게 지원안을 마련하였다는 방증이다. 한전은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 없는 졸속적인 지원안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3. 마을 공동체 파괴

밀양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해왔고 생업인 농사를 이웃과 함께 지으며 협업과 유대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다. 게다가 집안 대대로 한 마을에 살아온 경우가 많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오래되어왔고 공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겪게 된 이웃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가 주민들에게는 낯선 만큼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또한 농사를 비롯해 땅을 매개로 일과 삶을 함께 공유해온 이웃이 땅과 고향, 터전을 팔았다는 것이 반대 주민에게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고, 찬성 주민은 매향노로 물리는 것에 분개하여 서로 소통을 단절하게 되었다. 소통은 끊긴 채로 서로를 향한 비난, 왜곡으로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다. 가족 같이 지내온 이웃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2007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산업자원부의 인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접어들었지만, 밀양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7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전력은 마을보상금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보상금의 수령과 집행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는 주민 다수가 아닌 일부 주민과 접촉하여 합의한 것으로, 주민을 편 가르고 다투게 함으로써 평화로웠던 마을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한전은 송전탑 부지나 선하지에서 멀리 떨어진, 상대적으로 피해나 반감이 적은 마을부터 접촉하여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도 조장하였다. 공사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과의 합의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서, 많은 마을이 합의한 공사를 일부 마을과 소수의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에 합의한 마을과 반대하는 마을 사이의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공사로 인한 공동체 파괴 요인의 유형으로는 △마을주민 전체 대상이 아닌 개별접촉으로 회유·설득, △주민 개별 포섭으로 인한 주민대표자의 잦은 교체, △마을 내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분열 조장, △송전탑 건설 찬반 문제로 야기된 이웃들과의 고소·고발 및 불화, △송전탑 부지, 선하지에서 멀리 떨어져 피해가 적은 마을부터 보상금으로 포섭, △대표성 없는 주민과의 합의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밀양 주민의 상당수는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하면서 한전과의 싸움도 고통스럽지만 함께 살아온 마을 주민과의 분열, 의견 대립으로 맞서게 된 이웃 마을과의 갈등이 더 힘들다고 말하였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협의 방법이 마을 공동체를 파탄에 가깝게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인을 제공한 한전과 정부는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고심하고, 마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이러한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전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해당 공동체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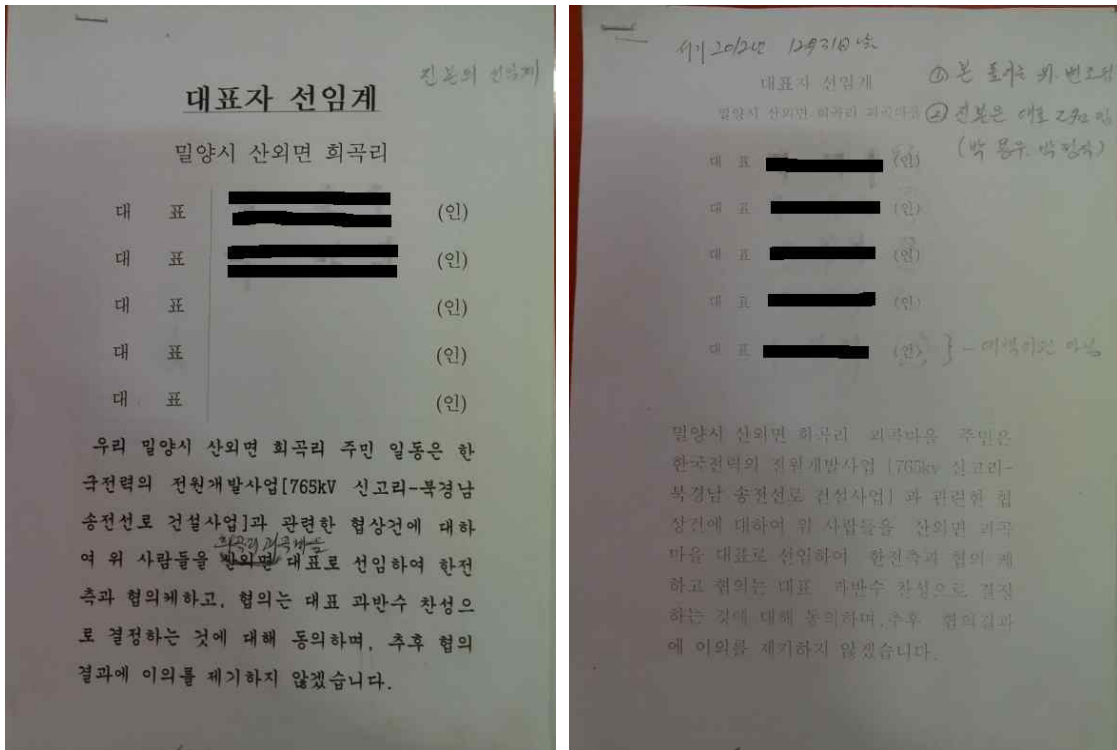
(1) 마을 공동체 내부 분열

1) 마을주민 전체 대상이 아닌 개별접촉으로 회유, 설득

한전은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듭하거나, 주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금품, 선물 제공, 식사 대접 등으로 회유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인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분열이 빚어지게 되었다.

2012년 8월,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 처장급 직원 1명과 차장, 과장 직원 각 1명은 산외면 괴곡마을 주민 5명과 10억 5천만 원의 지역 지원사업에 합의했고, 주민들이 이곳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탑 공사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87가구가 모여

사는 괴곡마을 공동체는 이 합의로 큰 혼란과 분쟁 속에 빠졌다. 합의에 응한 주민들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한국전력은 해당 주민 5명이 위조된 연명부 사용 등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에 응하였고,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의 체결로 마을 공동체를 분열에 빠뜨렸다.



△산외면 회곡리 주민들이 두 명의 마을대표를 선임하여 한전 측과 협상할 것을 동의하였다는 문서이다. 그러나 괴곡마을 주민들은 대표 선임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합의한 일부 주민들은 2012년 12월 24일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한 단장면 미촌리 소재 전답 및 유흥지 3,919평을 7억 5천만 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였는데, 한국 전력은 이를 알고도 거액의 마을합의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 한전이 주민 5명과 체결한 합의서 2항은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 밀양구간의 백지화가 이뤄져도 기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일체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다. 한전의 주민지원사업이 결국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활동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을 찬반으로 나누기 위한 주민 매수로 이용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²⁷⁾

백○○(상동면 옥수리/60)
김○○이라는 한전 사람이 몇 번 다녀간 이후로는 한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포섭하려고 했다.

27) 오마이뉴스, “한국전력 밀양 송전탑 일부 주민과 협약체결 논란”, 2013. 2.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165

정○○(부북면 위양리)

한전 직원들이 철탑건설을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했다. 또 술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개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

정○○(상동면 금호리/37)

철탑이 들어온다면 주민끼리의 분란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최초 찬성한 32명에 대한 질책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끼리 분열이 생길 것이다. 한전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회를 했어야 한다.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정당한 보상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상동면 주민 3천여 명 중 불과 30여 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주민 개별포섭으로 인한 주민대표자의 잦은 교체

2012년 8월에 87가구 중 5명의 주민만이 한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한 산외면 괴곡마을은 결국 큰 소란에 휩싸였다. 합의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이 교체되었고, 합의를 둘러싼 극심한 분열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다.

2012년 6월 10일 경에는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한전과 4개 면(상동면, 부북면, 단장면, 산외면)의 대책위원장들 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이는 주민들 모르게 마련된, 한전의 회유를 위한 자리였다. 당시 4개 면 중 부북면의 대책위원장 이○○는 강경한 반대 성향이었는데, 한전은 이○○ 대책위원장을 배제하고 대신 부북면 주민 노○○을 참석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급히 시청 소회의실로 쫓아가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대책위원장 체제를 없애고 4개 면이 각각 5명씩의 공동 대책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책위원장이 한전의 회유와 보상책에 노출되곤 했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는 이 전의 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대표성이 없으며, 4개면에서 각 5명씩 선출된 대책위원들에게 대표성이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2012년 6월 18일에 한전에 보냈다. 이 후 주민대책위원회는 다수의 공동 대책위원 체제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3) 마을 내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분열을 조장함

고정리 고답마을에서는 한전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고답마을 사람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한전직원이 “누구누구는 동의했는데 왜 할머니만 동의하지 않으시냐”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치우 어르신 분신 사건 후에는 주민들이 ‘분신’이나 ‘열사’와 같은 표현을 쓰면 한전이 해당 주민에게 1회 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동화전 마을에서는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면 벌금 3000만 원, 500만 원을 내야한다고 한전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주민들의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

4) 송전탑 건설 찬반 문제로 야기된 이웃들과의 고소, 고발 및 불화

동화전 마을은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경주 월성 손씨 집성촌으로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냈던 이 마을에서, 주민 손○○가 자신의 제증 형수인 이○○을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평생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사촌끼리 송사를 벌이고, 서로 말도 안하며 지내는 등 마을 공동체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고소와 고발, 벌금 등의 사건과 불안한 마을 분위기에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의 다툼이 몸싸움이 되어 기소된 사건도 발생하였다. 부북면 위양리 주민 윤○○은 밀양 송전탑 건립에 우호적인 주민들과 말다툼 중 머리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들이받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며 모욕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다. 또 주민 윤○○이 마을 회관의 냉장고를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가져가려다가 냉장고를 실제 사용하던 마을 주민과 실랑이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허벅지를 물어 기소되기도 하였다.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평화로웠던 마을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북면 위양리/72)

가장 힘든 점은 우리 마을주민하고 싸우는 것이다. 한전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싫다. 앞, 뒷집으로 살면서 너무 싫다. 예전에 마산에 철탑 농성하던 목사님이 반대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우리도 그렇다. 마산에는 철탑을 빼내고 나니깐 그 사람들(찬성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사가더라. 이렇게 힘드니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싶었다.

한○○(부북면 위양리/66)

한전과 싸우는 것은 전혀 안 힘든데 오히려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고 한전에 붙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제일 힘이 든다.

정○○(상동면 금호리/37)

송전탑 예정부지여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때문에 은행대출이 거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농협과 국민은행을 찾아가서 내 재산가치가 하락된 것에 대한 문서자료를 요구했다. 송전탑 공사 이전의 재산 가치와 현재를 비교해보려고 한 것이었다.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송전탑 예정지라서 대출이 어렵다고는 구두로 말했지만 문서자료로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내가 녹음하는 건 괜찮겠냐고 하며 잠시 서로 논쟁을 했다. 은행장, 은행직원 모두 직접 알거나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다. 내 생각에 한전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킨 점이다.

(2) 마을 간의 분열

1) 공사부지가 멀어서 피해가 적은 마을부터 보상금으로 포섭함

한전은 송전탑 부지나 선하지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피해나 반감이 적은 마을부터 접촉하여 보상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 과정에서 한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공사 부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들은 한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한 마을들에 대한 서운함과 갈등의 골이 깊다고 토로하였다. 한전은 공사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과의 합의를 언론 등에 알려져 마치 대다수의 마을이 이미 합의한 공사를 일부 마을과 소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수를 써가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전도 밉지만, 비열한 수법에 현혹되어 공사부지의 주민들을 외면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등의 감정이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였다. 보상을 받고 합의한 마을의 주민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만약 이후에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을 받은 자신들도 그에 상응하도록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런 과정 속에서 공사에 합의한 마을과 반대하는 마을 사이에 반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상동면 금호리/65)

다른 마을 간의 인심이 흥흥해졌다. 공사 현장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한전에 협조적이다. 송전탑 예정부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해는 거의 없고 한전에서 보상 받고 찬성하는 마을 사람들 보면 화가 난다.

백○○(상동면 옥수리/60)

김○○이라는 한전 직원이 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설명회 때 설명을 했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주민들 뜻에 따라 가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두 차례 김○○을 불렀었다. 김○○은 주민들이 마을과 철탑이 너무 가깝다고 멀리 밀어달라고 하면 밀어주겠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건의서를 올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북에 가서는 여수로 선로를 밀겠다고 말하고, 여수에 와서는 부북으로 선로를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 이 후에는 한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포섭하려고 했다.

윤○○(상동면 고정리)

선하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마치 전체 주민 중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일부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들은 소문으로는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위를 하게 하는 등 장난을 치고 있다.

2) 대표성 없는 주민과의 합의로 인한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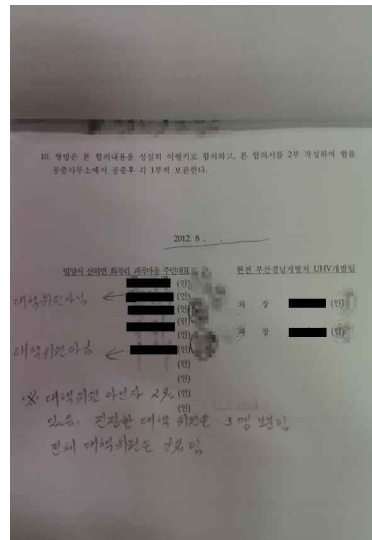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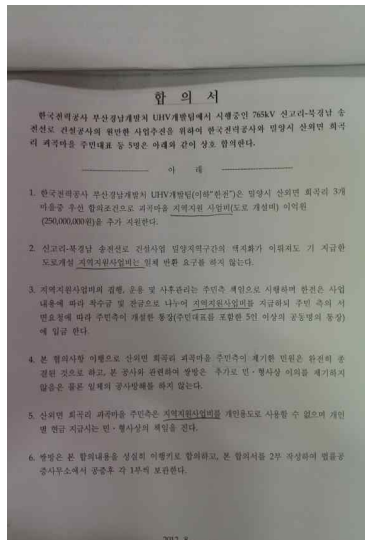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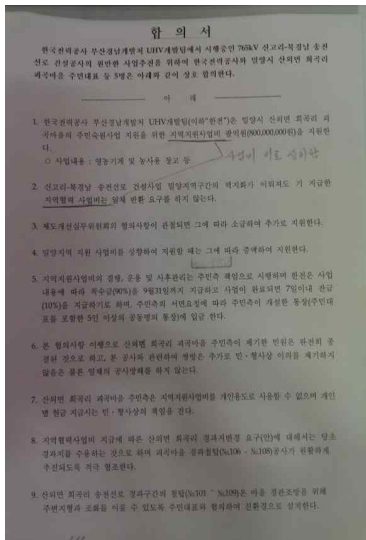
산외면은 수원 백씨 집성촌이며, 그 외에도 김씨, 박씨, 송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28) 시사매거진 2580, '밀양은 왜...' (857회), 2013. 6. 2.

었다. 예전부터 단합이 잘 되던 동네였으나 송전탑 때문에 위아래로 위치한 골안마을과 양리마을은 분열로 치닫고 있다. 2012년 8월에 산외면에서 한전이 단 5명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합의한 일은 주민 전체의 의사가 아닌, 송전철탄의 피해가 적은 양리마을의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협상하여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의 송전탑 찬·반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골안마을 주민들은 양리마을과의 분동을 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이장을 뽑았으나, 분동에 관한 조례가 있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외면은 2011년 12월 30일 마을총회에서 골안마을 3명, 양리마을 5명으로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2년 8월경 대책위원회에서 송전탑 건설에 합의하자는 의견이 나와 거수로 투표하였다. 골안마을 대책위원 3명은 반대, 양리마을 대책위원 5명은 찬성해 합의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나, 이 문제를 마을총회에 부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소문은 ‘합의하였다’고 퍼졌으며, 골안마을 주민들은 합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UHV개발팀에 보냈다.

2012년 추석 즈음해서 양리마을 대책위원이 소고기 선물세트를 골안마을 주민들에게 돌리는 일이 있었고, 이에 골안마을 주민은 양리마을 대책위원회에 한전과 합의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아직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양리마을 일부 주민들과 한전 측이 보상금 8억, 도로개설비 2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리마을 일부 주민이 한전과 합의한 합의서이다. ‘지역지원사업비(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글은 이억 원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2억 5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한 5명 중 공식적인 대책위원(8명)은 3명뿐이다. 게다가 한전 측은 차장, 과장이 개인 도장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사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결국 마을이 큰 소란에 빠져 합의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이 교체되었고, 주민들 간의 고소와 고발, 합의를 둘러싼 극심한 분열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다.

골안마을 주민들은 “양리마을 사람들끼리 인사도 안하고 쳐다도 안보고 지나가면 고개를 돌린다.”, “우리는 철탄이 문제고, 저그들은 돈이 문제다.”, “철탄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

렸다.”, “마을 행사가 있어도 이젠 안 나간다.”, “함께 하던 마을 나들이도 따로 한다.”, “철타이 안들어 서더라도 양리마을과 화해하기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4. 공사 과정에서 한전/시공사/용역의 인권침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직후인 2005년 11월 상동면 여수마을에서 최초로 송전탑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2006년 밀양·창녕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은 무시된 채 2007년 11월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승인이 난다. 그리고 한전은 2008년 8월 시공사 선정을 하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2009년부터 최근 2013년 5월까지 한전은 수차례 공사를 시도하고 중단하길 반복해왔다.²⁹⁾ 한전과 주민 간 갈등 중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이 나서며 각각 2009년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운영되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 강행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한전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이 완료될 시점을 앞두고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극심해지던 가운데 2012년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³⁰⁾의 분신 자결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다시 재개된 공사로 폭염 속에서 공사 현장을 지키던 많은 주민들이 쓰러졌지만, 한전은 공사를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했다. 국회 현안보고 이후 2012년 9월 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한전과 주민 간 협의테이블이 마련되지만, 타당성 및 다른 대안 검토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전은 보상의 문제로 일축하며 공사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2013년 5월 20일 공사가 재개되고, 공권력 투입마저 이루어졌다. 5월 29일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지난 열흘 동안 밀양 주민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가장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다시 재개된 공사, 새벽부터,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쳤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왔다. 이 챕터에서는 그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욕과 괴롭힘, △폭행, 감금 등 물리적 위협, △고의적인 위험환경 조성으로 인한 부상 유발, △고소·고발 등으로 위축감 조성, △농번기에 농사일을 하지 못하며 발생한 피해, △용역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누어 살핀다.

(1) 모욕과 괴롭힘

한전 및 시공사는 공사를 막으려 현장에 온 주민들에 대해 모욕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2009년부터 철탑 부지 벌목 작업을 하러 들어온 인부들은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는 주민들을 전기톱으로 위협하였다. 주민들이 쫓아다니다 탈진하도록 유도했고, ‘위리 위리’ 개 부르듯 주민들을 대하며 조롱하였다. 공사 현장이 가파른 산속에 있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 여성이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기는커녕 욕을 하거나 오히려 위협상황을 초래하는 등 주민들을 괴롭히고 도발하였다. 이번 5월 20일 공사 재개 후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생색내기용으로 차양막을 쳤다 거두는 등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였다.



△“이렇게 나무를 끌어안으니 밀동은 못 잘랐어”(부북면 대항리 이○○ 할머니의 말). 전기톱의 위협 속에서도 주민들은 나무를 껴안고 벌목을 막았다.(출처: 나눔문화)

29)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는 106쪽 참고

곽○○(부북면 위양리/65)

철탑을 세우기 위해 부지의 나무를 베러 인부들이 오면, 우리 할매, 할배들은 벌목을 막으려고 나무를 감싸 안는다. 이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말도 못할 상해를 많이 입는다. 인부들은 나무 하나를 베는 척하고 얼마쯤 톱질을 하다가 다시 위의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나무 벌목을 막으려고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나무로 옮겨가고,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가고... 그럴 때 인부들은 저 위에서 따라 올라오는 우리더러 "워리 워리" 하고 우리를 개 부르듯 한다. 완전 개 취급하는 거다. 베어 쓰러진 나무에 할머니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인부들이 저 할매 넘어졌다. 불로 붙여라, 화장시켜라, 이따위 말들을 한다.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돌려서 자빠뜨리든지 해서 병원에 입원시켜 못 나오게 하라는 지시도 한다. 이렇게 한 이천 평 되는 곳을 하루에 스무 바퀴, 서른 바퀴를 돌린다.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벌목을 막는 과정에서, 젊은 인부들이 바위 위에 올라가 뒷짐을 지고 할머니들을 내려다보며 "씨발년 씨발년~" 노래를 부르며 가파른 벌목지를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송○○(부북면 위양리/78)

2011년 11월경 127호 송전탑 부지에서 벌목을 말리다가 힘에 부쳐 벌목한 나무 더미 위에 쓰러졌다. 나무 사이에 끼어서 일어나지 못하자, 인부들이 불을 싸질러 화장시키라는 망언을 하면서 조롱했다.

장○○(부북면 대항리/51)

128호 공사부지에 벌목을 막는 날이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한○○ 님이 좀 순한 인부가 있는 나무 하나만 지키라고 해서 그 나무 앞에 있었다. 저쪽에서 젊은 인부들이 나무를 베고 있고 할머니들이 말리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젊은 인부 하나가 욱 해서 "나무 다 베어 버린다!" 외치며 이쪽으로 달려왔다. 설마 했는데 정말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벨테면 베봐라 하며 나무를 자르면 넘어지는 쪽에 앉았다. 그러면 안 벨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베더라. 인부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조금 뺏다가 다른 나무로 가서 베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한 3분의 1이 이미 베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순식간에 나무가 넘어간 거다. 나무가 나를 덮치고 나는 쓰러졌는데,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도 그냥 인부들을 불러서 위쪽으로 올라가버렸다. 구급대 부르고 경찰도 오고 난 다음 정신을 차려보니, 그 인부도 얼마나 급하게 했던지 자루에서 떨어진 손톱 날이 저쪽에 튕겨져 있고 안전모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때 할매들이 사진을 찍을 줄도 모르고 카메라도 없어서 사진을 제대로 못 남긴 게 안타깝다. 구급대에 실려 가는데, 작업반장이란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쏘하고 있네!" 하더라. 나중에도 병원에 찾아오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부북면 대항리/72)

송전탑 부지에서 하는 벌목을 막을 때 저들이 전기톱을 쓰기도 한다. 그 전기톱에 바지 잘려 나간 사람, 신발 밑창 갈린 사람, 많다. 또 저들은 우리 늙은이들을 놀리려고 나무를 베는 척하고 톱만 던진다. 그러면 다른 인부가 받아서 또 톱질을 하는 척하다가 다른 곳으로 톱을 던지고, 우리는 날아가는 톱을 따라다니다가 옷이 너덜너덜해져 개가죽이 된다.

정○○, 손○○, 석○○(부북면 위양리/72, 78, 86)

2011년 겨울, 시공사 인부들이 할매들보고 "씨발년~씨발년~" 노래를 부르고 나무를 못자르도

록 다리로 나무를 감싸 안으면 “이게 할매, 니 나무냐?”고 말함. 윤○○(정○○ 남편)은 바지가 전기톱으로 잘린 적도 있음. 나무 자르는 걸 막으면 반대쪽으로 가서 자르고, 겨울이라서 비탈지고 낙엽 때문에 미끄러 넘어지면 “저기 불 질러 버려라”라고 말함. 할머니들에게 개를 부를 때처럼 손짓으로 따라 오라는 듯 부르고 해서 모욕감을 줌.

한○○(부북면 대항리)

2011년 7월 1월 벌목 작업이 있었는데 한전과 용역 직원의 언어폭력과 폭행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의 경우 씨발년이라고 모욕을 주었고 용역들의 경우 마치 강아지를 어르듯이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할머니에게 “성냥불로 할머니와 나무를 함께 태워버려라”라고 하였다. 또한 용역들과 한전직원은 밀치고 손을 비틀고 했었다.

정○○(상동면 고답리/71)

한전 직원이 말로써 약을 올림. “모자는 왜 쓰고 있어요?”(모자 쓰고 있으니깐 사진 찍히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느냐며 약올림), “남자들은 다 어디가고, 여자들하고 할매들만 와 있느냐?”라며 할머니들을 약올림

김○○(상동면 옥산리)

제일 한전이 괴심한 게 (2013년 5월) 23일 인권위 오니까 그전까지 우리랑 싸우다가 그들이 오니까 경찰들이 나무 밑에 철수하더라. 할머니들 차양막 쳐주고.

안○○(상동면 고답리/79)

마음이 답답해서 수면 장애 있음. 글을 모르는 노인을 이용하려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언짢다고 하심

김○○(상동면 옥산리)

촌사람들은 천지간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식한다고. 123번에 헬기가 떴서 일을 하다가 올라갔어요, 내가 말려서 현장에 못 갔는데. 그 현장에 있으니깐 전화가 와서 장비 왔냐고 하는 거야? 큰 거 왔냐, 작은 거 왔냐 하는 거요. 02가 왔다고 했는기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02도 알고 06도 안다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구. 촌사람을 아무 천지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기라. 시공사 직원이지. 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내가 뭐라 하니 잘못했다 하면서 빌지만 말은 뱉어버리면 끝이지. 장비 같은 경우도 회사 장비가 임대장비가 물었는데 회사는 장비 없고 임대라고 했어요. 임대 들었으면 시간만 가면 돈 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로 잡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임대를 받으니까 대답하더라. 사람을 무시하고, 촌사람들을....

김○○, 손○○, 박○○, 이○○(단장면 동화전마을)

(84, 85, 88, 89번 공사 현장) 그곳에서는 인간 이하의 일들이 무수히 있었음. 2013년 5월 23일 또는 24일 새벽 3시에 그 곳에 가니 한전 직원 10여 명이 내리막길 앞에 서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내려가려고 하자 어깻죽지로 이리저리 막았음. 뚫고 내려갔더니 경사가 급해서 죽죽 미끄러지는 길. 구부러지지 않는 않았으나 스스로 설 수 없었음. 굴착기에 몸을 묶고 있었음. 남자 둘이 굴착기 뒤로 갔음. 새벽 6~7쯤 한전 직원들 30여 명, 경찰들까지 100여 명이 오기 시작하였음. 굴착기와 묶어있던 것을 끊으니 굴착기는 일하러 갔고, 허리에 계속 묶어 있던 쇠사슬을 일부러 있는 힘껏 고집어 당김. 줄을 질질 끌고 두 시간 정도를 쇠절단기에 이가

부딪쳐 이가 하나 빠지고 지금도 세 개가 흔들리고 있다. “할매, 정신차리고 걸어 나가소” 동물원 구경하듯.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우리는 동물, 저들은 구경꾼. 치욕감. 거기서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주위를 두 줄로 뺑 둘러막고 있었음. 경찰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

(2) 폭행, 감금 등 물리적 위협

고령 여성이 대다수인 주민들은 작은 충돌에도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한 전 및 시공사는 맨몸으로 막는 주민들을 장비로 위협하면서 위협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주민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였다.

한○○(부북면 대항리/65)

2011년 8월에 봉천 삼거리에서 회사 측 차량을 못 지나가게 막고 있는데, 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내려서 나를 패대기쳤다. 나는 다리 인대가 늘어났고, 반기부스를 두 달 했다. 127호에서 128호 가는 진입로에서 한백(건설회사) 사람이 스무 명 정도 와서 지키고 있던 할매들 손을 비틀어서 개 끌듯이 끌고 나갔다. 나는 바리케이드 삼아 놓은 평상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회사 측 사람들 열다섯 명이 평상을 끌고 가는 바람에 개 처럼 질질 끌려가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 당시에는 나 외에도 다친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128호 공사 부지에 대형 굴착기가 들어왔다. 굴착기로 공사를 하려고 해서 나랑 다른 할머니 한 분이랑 둘이서 굴착기 주걱 안에 누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사방에다가 기름을 발랐다. 옷이 전부 다 기름투성이가 됐다. 내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 누워 있으니깐 그들이 그대로 굴착기를 움직였다. 내가 만일 그때 겁이 나서 일어나거나 앉았거나 했으면 그날 사고가 나도 냐다.

김○○(단장면 동화전마을/42)

그 날 굴착기에 설탕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한전 직원들이 현장체포 한다는 이유로 구금하였다. 경찰들이 오기 전에 구금하였다. 묶여있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 묶이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고 한전 직원들이 항의하는 손○○의 가슴팍, 뒤통수를 쳤다고 한다. 그 이후 경찰들이 몇 차례 현장으로 찾아 왔었다. 감금당했던 당시 사진이 있다. 묶은 사람 중 미동 ENC(제갈○○, 제갈○○), 고소했으나 혐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들이 오기 전 풀어줬었다. “수갑 차고 갈래, 그냥 갈래?” 경찰차 타고 단장파출소로 갔다. 하○○ 변호사 왔고, 경찰 버스, 119, 수십 명 와서 주민들과 대치 상태였다. 설탕 넣은 사실이 없다. 시동을 걸면 고장 난다고 걸어보지도 않았다. 일이 있기 전 2~3일 전 “조만간 큰일이 있을 것이다”, 전기선을 전부 다 펴, 묶인 그 날 아침 산에 올라갔더니 큰 굴착기 문이 열려 있어 엔진실 문을 들여다보고 주민들 천막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욕을 함 “개새끼, 새끼, 너는 이제 죽었다, 설탕 넣은 거 다 증거가 있다”, 한 명은 주민들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쭈그러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날 숨겨 놓았던 만년필 녹음기를 찾아간 거였다. 밑에서 올라온 5명이 합류해서 총 7~8명이 와서 현행범이라고 묶어놓겠다고 했다. 반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손을 뒤로 돌려 손만 묶어 놓았다가 도망간다고 손과 발을 다 묶었다. 동네 아줌마가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다. 20~30분 후 이제 경찰이 온다고 자기네들끼리 풀어주라고 하더니 풀어주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위원장만 보낼 수 없다고 하니 묶은 사람들도 전부 다 데리고 갔다.



△2012년 9월 시공사 직원들이 굴착기를 쓰지 못하게 설탕을 넣었다면서 시공사 직원들이 단장면 동화전마을 반대대책위 위원장 김○○ 씨를 노끈으로 묶고 억류하였다.(출처: 영상캡처)

이○○(단장면 동화전마을)

(2013년 5월 22일) 혹시 몰라 8시 넘어 저녁까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직원들이 옴. 덩치가 매우 큰 남자가 오더니 둘러보고 흰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못간다고 차 문을 막고 서 있으니 팔꿈치로 가슴 명치를 때림.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바닥에 주저앉음. 당시 어지럼증으로 양산 병원에 검사를 받고 있었음. 경찰이 와서 인적사항만 적어주고 그냥 돌려보내줌. 이틀 뒤 경찰이 찾아와서 피해자 조사해 갔으나 아직 연락이 없음.

하○○(단장면 동화전마을/78)

할머니가 굴착기 밑에 있었는데도 장비기사가 할머니를 보고도 시동을 걸어 할머니를 위협하고 겁을 줌. 할머니가 너무 놀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음

(3) 고의적인 위험환경 조성으로 인한 부상 유발

한전과 시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험한 상황 속으로 내몰면서 공사를 강행해왔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공사 현장이 주로 깊은 산속에 위치하여 작은 충돌에도 크게 다칠 수 있고 위험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기 급급하였다. 별목 과정에서 인부들은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아서는 주민들에게 전기톱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한전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헬리콥터로 운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낮게 헬리콥터를 띄워 흩날리는 바람을 날리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굴착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몸을 묶은 주민들에 의도적으로 위력을 가하고, 극렬한 대치상황에서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데도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부상을 유발하였다. 농성하는 주민들이 땀별에 그대로 노출되게 방치하고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고의적으로 위험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공사가 재개된 열흘 동안 20명의 주민이 실신하고 다쳐서 병원에 후송되었다.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후 마을 주민 부상자 현황**

NO	일자	마을	성함	연세	병원입원지	비고	이후
1	5. 20.	평발마을(부북)	이○○	82세	부산 모병원	심장	
2		모정마을(상동)	이○○	73세	밀양병원	다리킴스	508
3		모정마을(상동)	서○○	81세	밀양병원	허리	퇴원
4	5. 21.	여수마을(상동)	박○○	68세	밀양병원	머리	퇴원
5		평발마을(부북)	이○○	73세	밀양병원	손킴스	퇴원
6		동화전(단장)	하○○	78세	밀양병원	혼절	퇴원
7	5. 22.	동화전(단장)	손○○	62세	밀양병원	머리	퇴원
8		동화전(단장)	박○○	60세	밀양병원	머리	퇴원
9		위양마을(부북)	석○○	86세	밀양병원	혼절	퇴원
10		위양마을(부북)	박○○	78세	밀양병원	혼절	퇴원
11		위양마을(부북)	정○○	72세	밀양병원	뇌좌상	퇴원
12		위양마을(부북)	권○○	76세	밀양병원	혼절	퇴원
13	5. 24.	동화전(단장)	임○○	72세	밀양병원	찰과상	퇴원
14		동화전(단장)	엄○○	75세	밀양병원	혼절	615
15		동화전(단장)	이○○	51세	밀양병원	얼굴	퇴원
16	5. 26.	고답마을(상동)	최○○	85세	제일병원	혼절	319
17	5. 27.	위양마을(부북)	서○○	55세	밀양병원	다리부상	퇴원
18		동화전(단장)	이○○	63세	미르치과	치아	치료
19	5. 28.	여수마을(상동)	안○○	69세	밀양병원	갈비뼈금	퇴원
20	5. 29.	여수마을(상동)	김○○	57세	밀양병원	탈진	퇴원
10일간 / 경과지 주민 부상 : 총 20명 / 평균 연령 : 70.8세							

임○○, 엄○○(단장면 동화전마을)

(2013년 5월 24일 84번 현장으로) 새벽 3시경 올라감. 준비해 간 쇠사슬을 뺏김 “정회가 쇠사슬 사주지요?” 아침 8~9시경 굴착기에 몸을 묶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끈을 끊더니 둘러싸더니 잡아당겨서 고집어 내려서 쓰레기 담는 큰 폐자루 위에 올려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20미터 정도를 감. 전신에 멍 들었음. 끌려가면서 목걸이 8돈을 분실.

장○○(부북면 대항리)

2010년 11월 6일 128번 송전탑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패대기치고 해서 타박상을 당하고 했는데 저는 나무를 하나 잡고 벌목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 때 강○○이라는 직원이 저에게 달려오더니 그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더라고요.. 그 베어진 나무가 저에게 쓰러져 저의 목과 어깨를 쳤다. 나무 밑에 깔렸다. 구급차에 실려 3주 진단을 받아서 5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 강○○이 인간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한전이 미운 것이라... 고소를 각하시켰다.

한○○(부북면 대항리)

2011년 11월경 한전의 공사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 한중간에서 평상을 놓고 마을주민 7~8명이 함께 막았다. 그 당시 파쇄기계, 굴착기가 들러 보내려고 용역과 한전 직원 7여 명이 평상을 질질 끌러가고 해서 골절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아 고소까지 하였다. 사진도 다 있다.

고○○(단장면 태릉리)

(2013년 5월 20일 공사 다시 시작된 후) 얼마 전 바드리 88번 철탑자리에 지원을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한전 직원이 아니고 경찰이 굴착기 주위를 에워싸고(약 50명) 굴착기를 가동하기 위해 물을 넣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둘러싸 있고,... 그러면서 공사 안 할 거라고 했다. 우리 주민 약 10명이 갔는데, 공사를 할 것 같아서 굴착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 3명이) 굴착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끈으로 굴착기와 몸을 묶었다. 경찰이 주민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어려웠고, 총 70명(경찰 50명, 한전 직원 20명)이 끌어내려 했지만, 어려웠다. 여성이었기에 여경을 불러 총 80여 명이 되었다. 결국 한전 직원이 공업용 카터칼을 경찰에게 주고, 경찰이 받아서 세 사람이 묶여있는 노끈을 잘랐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 위험한 짓이다. 그 대치되는 상황에서 발버둥도 치고 하는데,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칼로 자르려고 했다. 혹시 목이라도 찌르면 어쩌나 너무나 걱정되었다. 결국 3명은 분리되어 끌려나왔고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고, 결국, 기절을 했다. 헬기가 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헬기가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병원에서 3~4일 후에 퇴원을 했다. 그 다음 날, 우리 동네 주민 10명이 갔으나 집회로 5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 때 우리가 굴착기에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다. 한전직원이 약 25명 정도 에워쌌다 한전직원이 나오라며 "5분 시간 주겠다.", "1분 연장한다." 등 협박했다. 그 사이 89번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89번에서도 수상한 낌새가 있어서 도와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당시 울산에서 연대하러 온 5명, 카메라맨이 있어서 아주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정○○,손○○,석○○(부북면 위양리/72,78,86)

(2013년) 5월 충돌 당시, 20~22일 3일 동안 격하게 대립하였음. 첫날 20일, 82살 할머니를 못 들어가게 해서 대항하다가 실려 감. 21일을 격하게 못하고 22일은 무장하고 옴. 한전 직원, 용역 여자남자 20명이 둘러싸고, 한백 직원도 10명 넘게 와서 나무를 베었음. 할머니 8명이 127번 현장에 가서 굴착기 앞에 앉으니깐 한전직원하고 용역하고는 20명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꼼짝도 못하게 함. 둘러싸고 서서 10분 간격으로 교대하고 할머니들은 땀별에 하루 종일 앉았음.

서○○(상동면 고답리)

공사장 출입이 막힌 상태에서 한전직원이 들어가니까 경찰이 길을 열어줬고 그 틈을 타서 아버지가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던 경찰들과 같이 넘어졌다고 한다. 경찰들은 재빨리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못 일어나셨고, 그 와중에 공사장으로 들어가던 한전 직원들에게 허리를 밟혔다고 한다. 이후 아버지는 헬리콥터로 이송되었다.

정○○, 손○○, 석○○(부북면 위양리/72, 78, 86)

그러다가 우리 천막을 끈을 풀어 자기들 차양막으로 끈을 묶어서, 그것을 풀어서 목을 매려고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서 가지를 찾아서 잡아서 던지려고 하니깐 신 형사(밀양 경찰)가 등 허리를 잡아서 제지함. 그 곳에서 대성통곡 올라오니 평발 회장님이 길을 터놓아서 다시 들어와 앓음. 인권위에서 전화 밧데리가 나갔다고 나가버리니깐 기자들을 따라 데리고 나가고 기자가 3명밖에 안 남았음. 인권위 차가 출발하는 시동소리 듣고는 바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시작함. 굴착기를 빼내려고 우리를 밀치고, 앞에 막은 사람은 옆에 끄집어내고 굴착기가 빠지고 나니깐 헬기 띄우기 시작함. 그래도 앉아있으니깐 끄집어내려고 함. 이전에 급하면 옷을 벗자고 했는데 그래서 옷을 벗었음. 위에는 다 벗고 밑에는 바지를 벗었음. 직원들이 못 벗도록 해도 벗고 나서, 똥물을 조그만 페트병에 담아간 걸 뚜껑을 여니깐 직원들이 뺏으려다가 다 쏟아져서 내 몸에 다 쏟아짐. 일시에 달려들어서 끄집어내려고 해서 흠을 퍼서 집어 던지니깐 양 팔을 사람들이 잡았음. 한사람 앞에 4~5명씩 여자들이 달려와서 들어내기 시작함. 그때 발버둥 치다보니 지쳐서 기진맥진 되어버림. 여자들은 한전 직원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왔는데 용역인 것 같음. 힘이 아주 세고, 젊다. 막았던 8명 중에 5명이 부산대학병원에 실려 갔다가 CT 찍고 밀양병원으로 내려옴.

안○○(상동면 고답리/79)

공사 저지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팔에 타박상 입음.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기가 무척 불편함.



△2013년 5월 공사 과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주민((출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2012년 7월 28일 단장면 사연리 95호 현장, 27일 벌목을 막다 쓰러진 주민이 있으니 당장은 공사를 중지해 달라 요청하지만 전기톱을 놓지 않는다.(출처: 영상캡처)



△2013년 5월 공사 재개 과정에서 20명의 주민들이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출처: 연합뉴스)

(4) 고소·고발, 채증, CCTV 설치 등으로 위축감 조성

한전 및 시공사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집요하게 채증하면서 위축감을 조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주민들을 압박해왔다. 2012년 9월 국회 권고 이후 고소·고발을 취하하였지만, 2013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재개한 공사 강행 과정에서 한전은 다시 업무방해죄로 주민 1명을 고소한 상태이다. 2012년 6월 밀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항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8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건은 7월 4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³⁰⁾

1) 고소·고발 남발

2012년 9월 국회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과 시공사는 2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39건을 고소했는데, 이치우 님 분신 이후 취하하였다. 그러나 2012년 6월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전은 일부 주민들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및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³¹⁾ 시공사는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5건을 고소하였다. 2013년 2월 28일로 고소는 모두 취하된 상황이지만³²⁾ 몇 년 동안 주민들은 고소·고발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면서 고압적인 상황에 시달려야 하였다.

한○○(부북면 대항리)

이치우 어른신 분신 전에도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10건은 넘은 것 같다. 지금까지 경찰서에 2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고소 조사 건이 남아 있다. 일부는 경찰에서 고소 건을 푼 것도 있다. 오는 6월 20일에 재판결과가 하나 나올 것이 있다.

반○○(64/상동면 고정리)

3년 전에 상동역 바로 위 철탑 들어온다 해서 갔는데 이 분은 울타리 밑에 앉아 있고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으로 공사 방해라고 고발하고 검찰에서 980만 원을 내라고 했다. 돈 줄 테니 그 사람이랑 대질신문 시켜달라고 했다. 결국 답변 없었다. 목을 졸랐다가나 내가 때렸다면 모르겠지만, 한전 직원들이 무조건 그냥 사진만 찍는다. 경찰도 가봤고 검찰도 가봤고. 검찰 경찰조사에서 내가 한 말 하나도 안 적었더라. 죽고 싶다 말만 적어 있음. 그 사람들도 위에서 시킨 거니까 무슨 죄가 있겠나. 이 마을에서 2명, 다른 마을까지 해서 5명이 고소당함. 내 앞으로 980만 원 나눔.

김○○(상동면 고정리)

이치우 어른신 돌아가시기 전에 한전지사 데모하러 가서 계란을 던진 적 있음. 한전에서 무조건 사직 찍고 고발하고 경찰조사해서 벌금도 내고 그 어른(윤○○)도 돌아가시고. 맞나 안

30) 아시아뉴스통신, “송전탑 반대 주민, 밀양시청 항의 방문”, 2012. 6. 28.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366071>

31) 오마이뉴스, “고소고발 당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00명 넘어”, 2012. 9.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5997

32) 경남신문, “한전 밀양송전탑 시공업체, 반대주민 고소 모두 취하”, 2013. 2. 28.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63075>

맞나만 물어보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하고. 내가 옆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조사 끝나고 저녁이나 잡숫자고 얘기해서 식당에 갔는데 밥을 못 드셨다. 소주 한 잔도 못 먹었다. 평생 처음 경찰에 가보니까. 경찰에 불러 가서서 바들바들 떨고 그 이후부터 많이 놀랬음.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이 갔다. 경찰 조사 그대로다. 계란 쥐고 있는 사진 하나 때문에. 할머니 한 분, 아들 남았다. 일 년 넘게 고생하셨다. 오늘 윤○○ 어르신 제사. 그 좋아하던 술 한 잔을 못 넘기셨음. 그 이후 병이 나서 돌아가심. 경찰서에 처음 왔다고 함. 한전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김○○(산외면 희곡리)

한전 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 사진을 찍어서 5~60명한테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은행에 있는 자산들을 동결해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막고, 인심 써서 풀어주는 척 하면서 도리어 자기네한테 와서 빌도록 하는 방식 등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 당했으며 마스크, 방한복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한전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서 신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폭행으로 고발당했다 산외면 철탑반대 총무도 고발당했다.

○○○(단장면 태릉리)

초기에 공사 막기 위해 대치하였던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에는 공사 허가 전이었다고 한다. 허가도 나기 전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꼭 공사를 할 것처럼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대치하던 상황도 있었다. (허가 전, 인부가 들어와서, 대치상태에서 채증을 하고, 공사 가처분신청을 함, 2012년 6월, 박○○, 송○○, 고○○ 각 100만 원씩 - 한전에서 취하) 국회 지경위에서 작년 10월정도 공사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한전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마무리 되었다

○○○(단장면 태릉리)

헬기 밑에 점령했다고 해서 특수업무방해로, 시청에서도 특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시장을 만나러 갔으나, 시장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가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부북면 대항리)

2012년 한전에서 손해배상 10억 소송을 당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하루에 100만 원씩 가처분 소송 당하고 경찰서에 10번 이상을 갔었던 것 같다. 그때 현수막가게에 가서 현수막 3장을 만들어서 붙였다. 내용은 "한전에서 손해배상 10억 소송과 하루 100만 원씩 가처분소송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 남은 내 목숨마저 가져가도 내 목숨이 허락하는 한 한전송전탑은 절대 못 세운다"라고 하였다. 딱 그 심정이다. 더 용기가 생겨 더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2) 집요한 채증 및 CCTV 설치로 위축감 조성

한전 및 시공사는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현장에서 채증을 일삼았다. 또한 주민들은 위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와 굴착기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목적으로 채증이나 CCTV 등

영상기기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설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목적 외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CCTV 설치를 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다.

이○○(부북면 대항리)

이치우 님 돌아가시기 전에 고소당한 게 3건이 있다. 2010년 8월 상동면에 송전탑저지투쟁에 연대하러 갔었더니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고 저를 고소를 하였다. 2011년 8월경 128번 공사 현장에 한전 인부가 추석 전인데 공사 현장에 들어왔다. 그 당시 감리가 낭떠러지 주변에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할 것 같아 그 사람 혁대를 잡고 끌어당겨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내일모래가 추석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오늘 좀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감리가 폭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요. 그야말로 헬리콥터를 취하더니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가 넘어져 나놓고 고소를 했지요... 2011년 9월경 감리가 차에서 나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를 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사진을 찍느냐고 하니 그 이후 내가 폭행을 했다면서 고소를 했다.

이○○(산외면 희곡리)

전임동장이 마을주민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 108번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하면서 업무방해 해당되는 곳으로 가서 사진 찍혀서 고소당했지. 노란 줄로 펜스를 치는데 그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업무방해가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업무방해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카메라에 찍혀서 고소당했지. 우리도 많이 찍혔는데, 그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경찰에서도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누군지 물어볼 텐데, 리더들은 인적사항이 알기 쉬우니까 고소당했지.

백○○(상동면 옥수리/60)

CCTV가 장비에 다 장치가 되어있다고 보면 되요. 109번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상동면 고답리)

건설현장 컨테이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법적인 설치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5) 농사지을 권리 박탈과 일상과 생계의 위협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한전이 수차례 공사 시도를 반복하자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유일한 생계인 농사일을 뒤로 해야 하였다. 특히 한전이 2012년 6월과 2013년 5월 농번기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농사지을 권리를 위협당하였다. 이번 5월 20일 공사 재개 과정에서는 현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른 아침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공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주민들은 새벽 2~3시부터 현장에 올라야 하였다. 밤 늦게 겨우 내려오거나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농사는 계절과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할 수 없다. 농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면서 주민들은 너무도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주민들은 농사를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안감, 눈앞에서 농사가 망쳐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속상함 등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70/부북면 위양리)

농사일 못하고 다리 다쳐 병원 생활(2011년 11월~2012년 5월 현재) 하느라 농사일 못한 피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윤○○(부북면 위양리/73)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현재까지 평밭, 위양리 주민 70~80명들과 교대해가며 거의 날마다 철탑공사 현장을 지키는데 몰두하느라고 농사일을 못했습니다.

장○○(상동면 옥산리/68)

송전탑과 논외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고, 모든 작물(딸기, 고추) 농산물의 피해 또는 논외 시세의 피해. 모든 피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오랫동안의 갈등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귀중한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농사일에 차질도 너무 많았다.

고○○(단장면 태릉리)

산으로 한 번 올라갔다.(작년(2012년) 6월 초, 약 두어 달 정도 지켰다, 4개 조를 짜서 지켰다. 한 조당 7명씩 정도로 구성, 밤-남자, 낮-여자, 한전이 온다고 해서 모내기를 좀 일찍 했고, 준비를 했다) 산에서는 대치를 하고 내려 보냈다. 그래도 계속 올라와서 몰래 할까봐, 우리가 막으러 올라갔다. 자주 올라오지는 않았다. 혹시 공사를 할까봐 지킨 것은 약 두 달 정도 되고, 마을 입구에서 대치한 것이 석 달 정도 되었다. 우리가 큰 충돌은 없지만, 항상 긴장 속에 살았다(대책위원장이 사이렌을 울리면 다 모여야 했고, 지금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긴장된다) 농사짓는 것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우리 동네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 깻잎의 경우 제시간에 수확해야하는데 깻잎도 시간이 없어 따지 못하고 많이 버렸다. 정신적인 피해도 많다. 먹고사는 것이 엉망이 되었다. 농사피해가 많았다. 대치만 했어도 농사일이 엉망이 되고 먹고 사는 일이 엉망이 되었다. 허가도 나기 전인데 공사를 할 것처럼 와서 하루 종일 대치하느라...

손○○(78/부북면 위양리)

농사양이 반도 안 됨. 풀도 뜯고 가꾸고 해야 하는데 콩 다듬다가도 저놈들 온다고 하면 뛰쳐나가야 함. 원래는 콩 농사를 짓는데, 지금 콩을 심어야 하는데 못 심고 있다. 보리도 거둬야 하고, 마늘은 심기는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함. 먹는 것도 입안이 다 헐어서 먹기도 힘들.

천○○(상동면 고답리)

고관절 질환으로 공사장을 못가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새벽 3시 반,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농성장에 올라간다. 농사에 지장이 생겼다.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농성장에 올라가고 (3일에 한번 농성장에 올라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치고 힘들어 한다.

(6) 용역 폭력

노동현장과 개발현장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역폭력이 밀양 주민들에게도 있었다. 한전 설비공사에 필요한 시설과 신변 안전 때문이라며 밀양경찰서에 배치 신고된 경비구역 50명은 2012년 1월 16일 새벽 4시부터 현장에 투입되었다. 밀양에서 어떠한 신변 위협, 시설·설비 파손 위협이 없음에도 경비구역은 배치되었다. 이는 한전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 완료시점(2012년 2월 13일)을 앞두고 공사를 밀어붙이고자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102번 철탑부지인 이상우(고 이치우 어르신 동생) 소유의 논으로 굴착기를 갖고 들이닥쳐 옥설을 해대고, 주민들을 가로막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님이 논두렁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³³⁾ 다른 갈등 현장과 마찬가지로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도 용역은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³⁴⁾ 이날 저녁 극심한 폭력에 절망한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자결하였다. 이에 대해 밀양경찰서는 “불을 피우던 중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건”이라고 발표하면서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튿날 철수하였다.

1) 폭행과 폭언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우○○ 님(39세)은 용역이 투입되었던 2012년 1월 16일 용역과의 실랑이로 논두렁에 떨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용역들은 주민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후 우○○ 님은 상해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비구역뿐 아니라 시설주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경비업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산외면 희곡리)

2012년 1월 그때는 새벽5시라도 아직 어두울 때인데 마을 독길에 주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세워놓은 차를 용역들이 일방적으로 옮기고 체인 등을 끊어 마을에 들어왔다.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사장 주변을 막은 후 굴착기로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장으로 가려고 하면 손으로 밀고, 넘어지고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여자용역들이 여자주민들을 상대했다. 이때 두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분은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오고 가는 폭언은 비일비재했다.

33) 민중의 소리, “송전탑 막다 부상당한 농부, 거액 치료비로 곤경”, 2012. 2. 8.
<http://www.vop.co.kr/A00000473808.html>

34)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38/산외면 희곡리)

1월 16일(이치우 열사 돌아가신 날), 논두렁에서 용역 두 명과 대치하다가 용역에 밀려 1미터가 넘는 논 아래로 떨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밀양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반 입원했다. 진단서를 끊어 한전에 청구해 치료비를 받았다. 지금도 계속 아프고,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2012년 1월 16일 102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용역과의 대치 과정에서 무릎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우희덕님(출처: 민중의소리)

2) 이치우 어른신 분신 자결

2012년 1월 16일 극심했던 용역 폭력은 한 주민의 죽음을 불러왔다. 102번 첩탑부지인 이상우(고 이치우 어른신 동생) 소유의 논으로 굴착기를 갖고 들이닥친 경비 용역들은 하루 종일 폭력과 폭언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내일 다시 오겠다.”는 용역의 협박, 이곳에서 태어나 74년을 농사지으며 살았던 이치우 어른신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싸움에 절망감을 느끼며 저녁 8시경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분신 자결하였다. 그 배경에는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을 좌절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위력 행사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용역 폭력이 있었기에 이치우 어른신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이다. 1월 18일 밀양시의회는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밀양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³⁵⁾

한편, 분신 다음날 밀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을 피우던 중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건”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119에 밀양 경찰서 직원

35) 오마이뉴스, “7년간 투쟁한 어른신 분신, 언론·한전 소통 부재 탓”, 2012. 1.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6182

임을 밝힌 신고자가 ‘분신’이라고 말한 점, 출동한 소방관이 이송거절·거부 확인서에서 이유를 ‘자살 시도’로 든 점은 이미 경찰이 분신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축소, 은폐 의혹이 일자 결국 밀양경찰서는 1월 30일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이 분신자살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다.³⁶⁾ 그러나 이후 경찰은 이치우 어른신 분신의 직접적 사유가 되었던 용역 폭력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



△1월 16일 이치우 님 분신 직후 현장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7) 여성에 대한 폭력

한전 및 시공사 직원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비일비재하였다. 주민 다수가 여성이기에 대치 상황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다. 밀양에서는 2011년 11월 배○○ 스님 성폭력 사건에 이어 2012년 8월 다시 문정선 밀양시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어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전을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공사

36) 프레시안, “경찰, 74세 노인 분신 사건 은폐 의혹”, 2012. 1. 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127152009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전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 한전은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이러한 폭력을 조장하였다.



△2012년 9월 6일 한전 부산·경남 개발처를 향의 방문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한전 측에 공사 중단과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출처: 오마이뉴스)

1) 배○○ 스님에 대한 폭력

2011년 11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산외면 108번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시공사 직원(대동전기)들이 약산사 배○○ 스님의 모자를 벗기려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깔리게 되었다. “씨발년, XX를 찢어죽이겠다”, “요즘 앉아 오줌 누는 년들이 더 설치니 나라가 엉망이지” 등의 폭언을 하면서 성기 부분을 발로 밟고 문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10여 분간 지속되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회음부 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한 배○○ 스님은 가해자들을 밀양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고 관련 영상자료가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³⁷⁾ 이후 성폭력 가해자였던 직원들이 2012년 6월 7일 공사부지 답사를 하기 위해서라며 다시 약산사에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사냥개와 함께 낮을 들고 있었다. 다시 찾아와 죽인다

37) 민중의소리, “밀양 송전탑 공사 관계자 여스님 무차별 폭행...‘음부를 주먹과 발로 찼다’”, 2012 . 1. 25.

<http://www.vop.co.kr/A00000469542.html>

는 말을 남겼었기에 두려움에 배○○ 스님은 실신하였고, 구급차로 호송되었다. 배○○ 스님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³⁸⁾

배○○(산외면 희곡리/51)

2011년 11월경 108호 송전탑 부지에서 벌목 저지를 하던 중, 현장소장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씨발년, XX를 찢어죽이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위협했다. 주민과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 내가 끼어들었는데, 갑자기 한전 감리 등 세 명의 인부가 나에게 달려들어 복면을 벗겨내고 쓰러뜨린 후 왼쪽 다리를 180도로 꺾어 올렸고, 현장소장이 음부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할퀴는 짓을 반복했다. 나는 의식을 잃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고, 회음부 좌상 등의 진단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에 현장소장(가해 당사자)이 찾아와서 합의를 계속 요구하면서 “네년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2011년 11월 한전 감리의 상의를 붙잡고 있던 배○○ 스님이 다리를 든 누군가에 의해 바닥으로 쓰러진 장면. 이 때 성폭력이 발생하였다.(출처: 영상캡처)

○○○(산외면 희곡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18일 사이에 격렬한 일들이 있었다. 특히 우리 마을에서는 스님(배○○)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심했다. 그 순간에 주민들도 있었고 경찰(정보과 형사로 추정)도 있었다. “씨발년아”,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를 찢는다”고 하고 때리는데 경찰들이 왔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사진만 찍었다.

배○○(산외면 희곡리/51)

2012년 6월 7일, 인부들이 공사부지 답사를 이유로 내가 혼자 사는 약산사에 사냥개(도베르만)와 낫을 들고 무단 침입했다.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나는 이들을 보고 너무 놀라 사지마비와 호흡곤란이 와서 다시 병원에 입원,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38) 민중의 소리, “밀양 송전탑 관계자들, 개 끌고 낫 들고 나타나 주민들 흥분”, 2012. 6. 10.
<http://www.vop.co.kr/A00000510406.html>

2) 문정선 밀양시의원에 대한 폭력

2012년 6월 공사 재개 과정에서 한전 및 시공사는 단장면 금곡리에 있는 야적장에서 헬기로 자재 운반을 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8월 25일 문정선 시의원이 야적장 펜스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아래로 기어들어간 문 의원을 직원들이 가로막았고 항의하는 문의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댔다. 직원들은 30여분 가량 문의원의 목과 배를 깔고 앉았다. 문 의원을 돕고자 담장을 넘어 들어간 주민은 직원들에 붙잡혀 격리되었다. 30여분 후 주민들의 신고로 구급대가 와서야 문 의원을 깔고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문의원은 목과 척추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³⁹⁾

이에 대해 8월 29일 민주통합당 및 지역 여성단체들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한전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9월 6일 대책위 등이 한전 부산·경남개발처를 항의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전은 “현장직원들의 방어적 행위만 있었을 뿐 어떠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다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적 쟁점화, 이슈화하는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를 전면 부인하였다.



△2012년 8월 25일 문정선 밀양시의원에 대한 공사 인부들의 폭행 장면이다. 헬기장 접근 못하도록 1시간 동안 깔고 앉고 내리눌러 이후 수술을 수차례 받고 몇 달째 병원 입원해야 하였다. (출처: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문정선(밀양시의원/45)

나를 고무리뜨려 옆드리게, 몸을 숙이게 해서 내 목 위에 사람이 걸터앉았다.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도 잡고. 20분을 걸터앉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 목을 척추를 다친 것 같다.

39) 뉴시스, “밀양 송전탑, 한전 하도급 업체 문정선 시의원 '폭행 논란'”, 2012. 8. 26.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49807

5. 경찰의 인권침해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사례는 많지는 않았다.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전까지는 주민이 경찰을 목격한 경우는 한전 및 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밀양시청, 한전 밀양 지사에서의 농성, 집회에 투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밀양 송전탑 갈등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된 것은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후이다. 한전은 5월 20일 공사 재개 직전인 5월 8일에 경찰 측에 ‘공사재개 예정 통보 및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질서유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경찰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경찰은 5월 20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500여 명을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전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대한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⁴¹⁾ 이러한 행위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당시 경찰의 경비 지침은 안전 보호보다는 통행 제한, 검거 등을 통해 한전 측의 공사 진행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 경비 지침에 그나마 있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한전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체포 및 편파수사,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잉 대응, △주민 안전 보호 조치의 미흡, △모욕, △주민의 이동권 제약, △식별 표시 미부착, △폭우 상황에서 공사장에 있던 주민의 신변 보호 조치 외면, △연행 및 고소 위협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체포 및 편파 수사

2012년 9월 7일에 96번 송전철탄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동양건설 소속 인부들이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 김○○ 씨(40세, 농민)를 20여 분 간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쓰는 원통에 노끈으로 묶어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시공사 직원들은 김○○ 씨가 굴착기 엔진에 설당을 타고, 공사장 경계측량을 위한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공사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억류 행위를 한 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파출소로 연행하여 갔다. 당시 김○○ 씨는 단장면 송전탑 반대대책위 위원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찰은 현행법으로 그를 처리하려 하였다. 체포 당시 현행법 체포 요건인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⁴²⁾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권력이 과잉되게 집행된 것이다.

또한 당시 출동 경찰은 억류 과정에서 폭행 의혹이 있던 시공사 직원들은 현행법이 아니라고 본 반면, 김○○ 씨만 현행법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김○○ 님을 연행하고 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나자 며칠 뒤 시공사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경찰이 갈등 현장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40) 한전이 부산경남개발청장 명의로 경찰 측에 보낸 공문 일부

‘..... 공익사업인 본 공사 재개 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물리적 충돌 방지와 사고예방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병력투입 등 관련조치를 요청하오니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41) 오마이뉴스, “할머니들 옷 벗고 항의... 부상자 3명 병원 후송”, 2013. 5. 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6885

42)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판결요지】

-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한전 시공사 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편파적인 수사로 판단될 수 있다.

김○○(단장면 동화전마을/42)

그 날 굴착기에 설탕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한전 직원들이 현장체포 한다는 이유로 구금하였다. 경찰들이 오기 전에 구금하였다. 묶여있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 묶이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고 한전 직원들이 항의하는 손○○의 가슴팍, 뒤통수를 쳤다고 한다. 그 이후 경찰들이 몇 차례 현장으로 찾아 왔었다. 감금당했던 당시 사진이 있다. 묶은 사람 중 미동 ENC(제갈○○, 제갈○○), 고소했으나 혐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들이 오기 전 풀어줬었다. “수갑 차고 갈래, 그냥 갈래?” 경찰차 타고 단장파출소로 갔다. 하○○ 변호사 왔고, 경찰 버스, 119, 수십 명 와서 주민들과 대치 상태였다. 설탕 넣은 사실이 없다. 시동을 걸면 고장 난다고 걸어보지도 않았다. 일이 있기 전 2~3일 전 “조만간 큰일이 있을 것이다”, 전기선을 전부 다 펴, 묶인 그 날 아침 산에 올라갔더니 큰 굴착기 문이 열려 있어 엔진실 문을 들여다보고 주민들 천막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욕을 함 “개새끼, 새끼, 너는 이제 죽었다, 설탕 넣은 거 다 증거가 있다”, 한 명은 주민들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쭈그러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날 숨겨 놓았던 만년필 녹음기를 찾아간 거였다. 밑에서 올라온 5명이 합류해서 총 7~8명이 와서 현행범이라고 묶어놓겠다고 했다. 반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손을 뒤로 돌려 손만 묶어 놓았다가 도망간다고 손과 발을 다 묶었다. 동네 아줌마가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다. 20~30분 후 이제 경찰이 온다고 자기네들끼리 풀어주라고 하더니 풀어주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위원장만 보낼 수 없다고 하니 묶은 사람들도 전부 다 데리고 갔다.



△2012년 9월 7일 시공사 직원들에 의해 억류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 마을 위원장(출처: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2)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잉 대응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은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의 공사 현장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5월 22일 88번 철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은 한전 직원이 제공한 일반 커터칼로 주민의 몸과 굴착기를 연결한 노끈을 끊었는데, 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이었기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주민과 굴착기를 묶은 줄은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매듭 상태였고, 줄을 묶은 주민은 3명인데 반해 경찰은 50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민의 안전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 및 국제 기준⁴³⁾에서 요구하

43)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33(1990)

4. 직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관들은 물리력과 화기 사용에 의존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는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한편, 공사 현장이 대부분 산악 지대로 경사가 높아서 불필요한 충돌을 할 경우 주민들이 다칠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에 당시 경찰의 경비지침 상에도 ‘공사 현장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 돌을 구르거나 시위대를 밀지 않도록 주의(부상 및 추락 우려)’, ‘반대 주민들이 대부분 60~70대 고령의 할머니이니 신체적 접촉 가급적 금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주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출동 당시 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다.

손○○(단장면 동화전 마을/63), 박○○(단장면 동화전 마을/60)

2013년 5월 22일 오전 10시경 챙겨온 사탕을 경찰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웃으며 농담 중, 하청업체 현장 반장 정 과장이 오더니 오늘 일 안 한다고 함. 자리에 앉아 있으니 굴착기에 물을 붓는다고 하니 일을 시작할 것 같아 굴착기 밑으로 들어감. 굴착기에 연결된 끈과 자신의 다리를 묶었음. 억지로 고집어내려고 몸싸움. 한전 여직원이 경찰에게 커터칼을 건네주자 사람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그 커터칼로 사람 몸에 묶인 끈을 끊었음(구○○ 목격) 나오던 중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손○○),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박○○), 헬기로 구조함. 경찰에게 커터칼로 끊은 사람을 신원 확인해 달라고 하자 경찰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사이 한전 여직원은 도망감.

고○○(단장면 태릉리)

얼마 전 바드리 88번 철탑자리에 지원을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한전 직원이 아니고 경찰이 굴착기 주위를 에워싸고(약 50명) 굴착기를 가동하기 위해 물을 넣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둘러싸 있고,... 그러면서 공사 안 할 거라고 했다. 우리 주민 약 10명이 갔는데, 공사를 할 것 같아서 굴착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 3명이) 굴착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끈으로 굴착기와 몸을 묶었다. 경찰이 주민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어려웠고, 총 70명(경찰 50명, 한전 직원 20명)이 끌어내려 했지만, 어려웠다. 여성이었기에 여경을 불러 총 80여 명이 되었다. 결국 한전 직원이 공업용 카터칼을 경찰에게 주고, 경찰이 받아서 세 사람이 묶여있는 노끈을 잘랐는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그 대치되는 상황에서 발버둥도 치고 하는데,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칼로 자르려고 했다. 혹시 목이라도 찌르면 어쩌나 너무나 걱정되었다. 결국 3명은 분리되어 끌려나왔고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고, 결국, 기절을 했다. 헬기가 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헬기가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병원에서 3~4일 후에 퇴원을 했다.

장○○(부북면 대항리/57)

2013년 5월 20일 평밭마을에 전경 200명 용역 40명 한전직원 40명이 132번 송전탑 밑에 헬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의도한 결과를 이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거나 다른 수단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물리력과 화기를 사용해도 좋다.

5. 합법적인 물리력과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언제나, 법집행관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위법행위의 정도와 합법적 목표에 준하여 물리력과 화기 사용을 자제한다.

(b)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할머니 3명이 고립되어 전경이 20명이 막아 이동제한 하였다. 할머니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경과 용역직원과 몸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더욱 어깨가 좋지 않다.



△2013년 5월 공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에 손 부상을 입은 부북면 이재란 할머니 ©나눔문화

(3) 기본적인 안전 조치 방해

5월 2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28일까지 밀양은 최고 기온이 33.8°C에 이를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하루 종일 있었기에 열사병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강한 햇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인 차양막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막았다. 아무리 경찰이 당시 상황을 불법 상황으로 보았다고 하여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마저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외면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최○○, 곽○○(단장면 동화전마을/80)

주민들이 차양막을 치려고 하자 못 치게끔 방해 함. 경찰은 최소한의 햇빛 가리개(차양막)조차 허용하지 않았음. 사람들이 일부러 쓰러지도록 만들어 끌어내기 쉽게 하는 것 같음.

44) 기상청 지난 날씨 데이터

http://www.kma.go.kr/weather/observation/past_cal.jsp?stn=288&yy=2013&mm=5&obs=1&x=24&y=14

(4)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모욕

경찰은 5월 21일에 긴급 구제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인권위 측의 조사에서도 나오듯 주민들에게 “씨발 년”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당시 현장의 인권위 현장조사단이 현장 출동 경찰에게 주의 및 교육을 당부하기도 하였다.⁴⁵⁾ 당시 경찰의 경비 지침 상에 나온 ‘성적 발언, 욕설, 반말, 침뺨기,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자극하여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지침마저 현장에서는 무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주민들에게 경찰의 일상적인 욕설은 모욕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게다가 여성을 대상으로 ‘씨발년’과 같은 성폭력적 발언을 한 점은 경찰 스스로가 성폭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는 황당한 사례이다. 전·의경에 대한 일반적인 반성폭력 교육을 비롯한 인권 교육의 부실은 결국 현장에서 이러한 성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⁴⁶⁾

곽○○(부북면 대항리)

경찰들이 한전 공사 관계자 5명을 에워싸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오물을 뿌리니까, 경찰이 “씨발년,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욕설을 하였음.

정○○(부북면 대항리/72)

2013년 5월 21일 11시 경 4명이 차를 타고 부북면 평밭마을 127번 송전탑건설현장 근처에 왔는데, 경찰들이 차를 막고 진행을 제지하여 차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하니 경찰이 “씨발년”, “개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여 차에서 내려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욕을 하나고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니까 도망갔음.

한○○(부북면 대항리/66)

2013년 5월 22일 132번 송전탑 헬기장 건설을 막기 위해 할머니 8명이 굴착기가 일을 못하도록 에워쌌다. 그리고 나서 한전 직원 인부들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소변을 급하게 보려고 나서려고 했는데 경찰이 보내주지 않아 그 자리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수치스러웠다.

45) 5월 공사 재개 당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인권위 직원) 활동 보고 중 일부

'작업 현장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한영 과장, 김수성 중대장 등)에게 경비업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로부터 욕설과 거친 행동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주의,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 측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확실히 주의,교육하겠다고 답변하였음.'

46) 국가 인권위는 2010년 6월 14일 전·의경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의경 집단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전·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으나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

백○○(상동면 옥수리/60)

경찰들은 한전보다 더 하죠. 경찰들이 보면 다 들어낸 사람들이 경찰들이다. 공사 중단되던 마지막 날 내가 111번 막고 내려오다가 경찰 4명과 마주쳤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도로를 종대로 서 가는 게 아니라 횡대로 서 가지고 도로를 다 막고 걸어가는 거다. 학생들이 경찰들이 너무 거만해서 사진을 찍었어 그 모습을. 그 인간들은 보니까 아, 어른도 없고 주민을 상대로 옷 벗어 던지고 하는 거 처음 봤다. 그게 아마 집사람 동영상에 찍혔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안 다치게 하려고 말리는 과정에서 내 나이가 50~60인데 '씨'자를 써가면서 그건 경찰이 아니죠. 그 친구가 자기한테 '사진 찍지마' 손가락질을 하니까, 수염이 긴 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경찰을 막고 옷을 뺐스만 입고 다 벗었는데 사과를 해야 보낸다고 했는데도 결국 사과를 안 하니 이 친구가 도끼를 가져와서 자기 새 차를 다 찍었다. 그거 인간들은 경찰도 아니다.

(5) 식별표식 미부착

2013년 5월 20일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장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들은 그들의 신분(부대명,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의 식별표식 미부착에 대한 우려는 2009년 국가인권위의 권고⁴⁷⁾, 2011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⁴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경찰이 신분 표식을 부착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불법적



△어떠한 신분 표식도 부착하지 않은 채 127번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찰(출처: 오마이뉴스)

47) 국가 인권위는 2008년 5월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2008년 10월 27일 직권조사 권고를 발표하였다. 당시 권고 내용 중 ‘경비 업무 시 착용하는 의복에 식별표식을 하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식별표식 부착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보호복 등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식 부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48)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A/HRC/17/27/Add.2, 2011.3.21.)
63. 특별보고관은 (중략),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인 행위에 대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6) 이동권 제한

2013년 5월 20일부터 투입된 경찰들은 밀양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상동면 여수마을에서는 경찰이 공사장 진입로가 아닌 마을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였다. 다리 건너편에 마을 주민분의 밤나무 밭이 있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 자비를 들여 만든 다리인데도 단지 공사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민의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당시 경찰 측의 경비 지침 상에도 ‘공사항목’ 부분에서 ‘마을에서 출발 시부터 주민 집단 이동 차단, 이동 구간 검문 검색 강화, 인화성 물질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즉, 경찰은 현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출동 전부터 주민의 이동권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다.

백○○(상동면 옥수리/60)

(공사장으로 가는) 다리 폭이 한 4m인데 경찰들이 끝까지 막고 있으니 절개지 높이가 5m인데 밑에는 큰 바위이고. 다리가 막히면 못가는 거다.

(7) 신변 보호 요청 무시

5월 27일 상동면 여수 마을 주민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파른 산자락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 당시는 공사 강행의지가 있던 한전마저도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 안전을 걱정한 마을 주민이 정보과 형사를 통해 보호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현장에 방문한 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최소 안전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철수하였다. 철수 당시 경찰은 새벽에 주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올라오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폭우가 밤새 내리고 있었던 점, 산 위에 있던 주민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⁴⁹⁾를 방기한 것이다.

4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백○○(상동면 옥수리/60)

오후 3시부터 비가 와서 할머니 네 분을 먼저 보냈다. 나머지는 한전에 협상에 들어갔어요. 공사를 중단하면 할머니를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비 그치면 5시 반부터 일을 한다고 하니 할머니들이 안 내려왔다. 한전에서는 우리 대표들이 주동을 해서 할머니들을 못내려고 오게 한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6시쯤에 경찰에 전화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할머니들이 산에 있으니 가서 지켜야겠다. 절개지도 많고 하니. 119, 경찰이 출동하고.. 이장님도 옥을 봤어요.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려다 못 내려오시고 같이 자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철수하면서 내일 새벽 5시에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왔다. 그래 할머니도 내려오다 뼈 다치셨다.



△5월 23일 당시 상동면 옥수리 주민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비를 피했던 임시 천막(출처: 오마이뉴스)

(8) 법적 조치에 대한 압박을 내세운 위협

5월 20일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 형사고발 등의 위협을 자주 가하였다. 당시 상황

이 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공사장에서의 대치 과정이었기에 경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여겨질 수도 없었다. 이처럼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이 형사 고발 등의 위협을 한 것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주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은 고소 고발로 위협감을 느꼈음을 호소하였고, 가족들이 걱정하기도 하였다.

김○○(단장면 동화전마을/42)

경찰병력이 법조문 언급하며, 체포, 구금, 형사고발 등 협박하고, 욕설, 반말(난 임무만 하면 된다. 당신들 다시 볼 일 없다 등)을 함. 경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했으면 함에도 일반적으로 한전편을 들고 공사 강행을 유도하고 있음.

고○○(단장면 태릉리)

주민들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도 위축되는 부분은 많다. 다행히 도와주는 변호사가 4명이 있어서 두려움은 없다. 집에서는 걱정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 500여 명의 경찰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채증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을 압박하였다. 2013년 5월 24일 85번 공사 현장에서 경찰이 식별 표식도 달지 않은 채 채증을 하고 있다.(출처: 민중의소리)

6.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 조사의 배경 및 취지

인권과 건강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건강상의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폭력, 차별, 배제 등은 일정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한 지표가 된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다소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인권침해 수준을 구체적 건강 수준 평가를 진행하면 그것을 추상적으로나마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갈등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인권침해로 인해 밀양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갈등과 인권침해로 정신 건강 수준의 저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갈등과 인권침해가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조사 방법

2013년 6월 8일 4개 마을(단장면 동화전마을, 산외면 회곡리 보라마을, 상동면 옥수리 여수마을, 부북면 대항리 평밭마을)에서 일반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등의 정신증상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심리검사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독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더불어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상담과 문진을 실시하였다. 상담 및 조사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9인(정신과 의사 1인 포함),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 1인, 새물약사회 및 농민약국 소속 약사 3인 그리고 보건 의료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3인, 젊은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소속 학생 3인 등이 함께 하였다.

4개 마을 300여명의 주민 중 8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2명은 마을 주민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79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주민 중 25% 내외의 주민에 대한 설문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9명의 주민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23명(29.1%)는 남성이고 56명(70.9%)는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70.4세였고, 가장 젊은 조사대상자는 43세, 가장 나이 든 조사대상자는 87세였다. 산외면 주민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장면, 상동면은 각각 21명, 부북면 주민은 12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
성별		
남성	23	29.1
여성	56	70.9
마을		
단장면	21	26.6
산외면	25	31.7
상동면	21	26.6
부북면	12	15.2

※ 평균 연령 : 70.4 ± 9.3세 (최소 : 43세, 최대 : 87세)

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를 막느라 힘들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를 무시하였다”, “지금도 재산상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이다”, “송전탑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다”,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는 문항에 대한 공감 인식이 대체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장기간 길어지는 송전탑 건설 공사 저지 과정에서 극도로 심신이 피로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정부와 한전이 자신들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송전탑 건설부지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고향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크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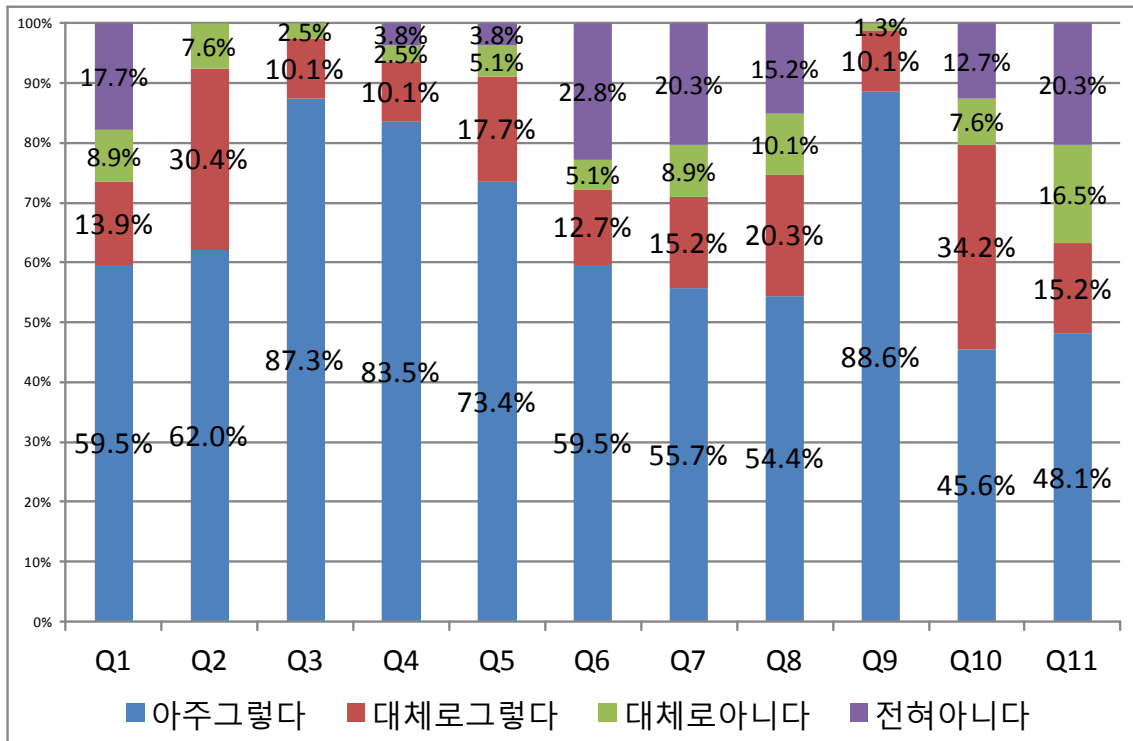


그림 31 송전탑 건설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Q1)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Q2) 송전탑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다
Q3) 정부와 한전은 우리를 무시하였다
Q4) 지금도 재산상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이다
Q5)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
Q6)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불만이다

Q7) 이웃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안타깝다
Q8) 결국 송전탑이 세워지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Q9) 공사를 막느라 힘들다
Q10) 낯선 사람들이 두렵다
Q11) 경찰 등 공권력이 두렵다

다. 학대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에게 유무형의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59.5%가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4.3%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이 “모욕적인 말, 욕설 등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34.2%가 각종 고소,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15.2%가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응답했고,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15.2%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건설 공사를 막기 위한 행동이 벌어질 때에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들에 의한 각종 학대와 폭력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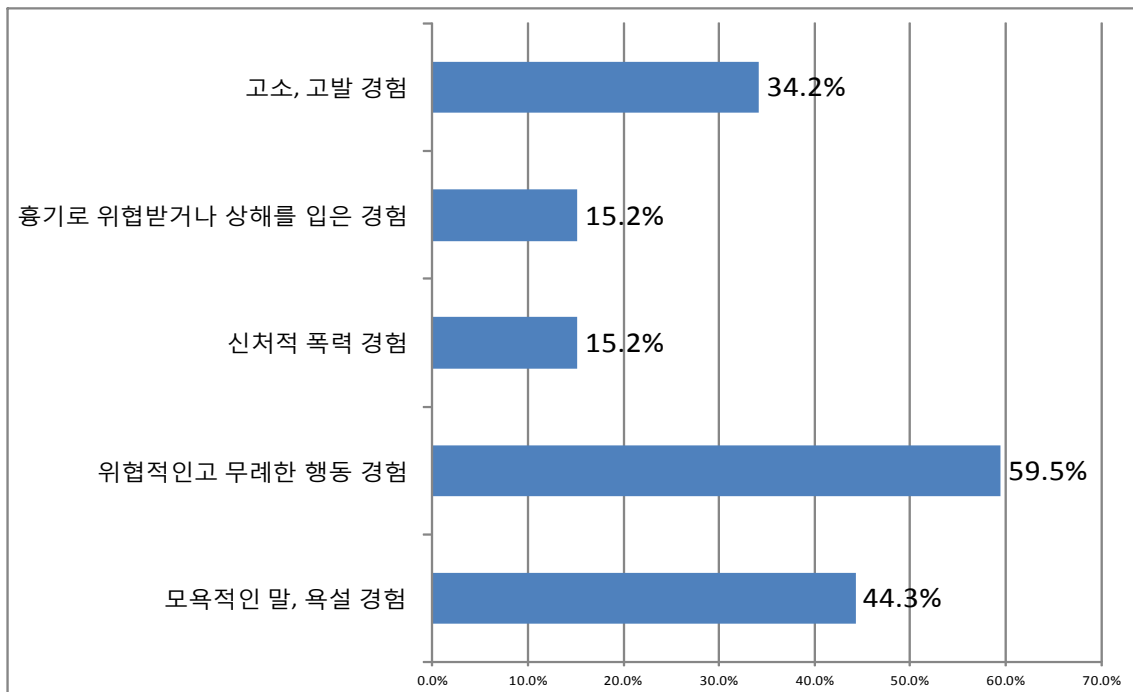


그림 32 학대 및 폭력 경험

라. 정신 증상 조사 결과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40.5%,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48.1%,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공포 증상을 보인 이들은 41.8%였다. 이들 중 특히 그 증상이 심하여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이들은 우울 증상이 17.7%, 불안 증상이 30.4%, 공포 증상이 29.1%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28.8%~30.9%이고 매우 심각한 증상을 보인 이들이 13.8%~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평균적 노인 인구에 비해 1.4~1.5배 정도 더 우울증 고위험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신 증상 측면에서 볼 때 조사 대상자들 중 우울감보다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 상태 이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는 과국적인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며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을 견고히 하고 있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 과정 중에 있기에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 상황이 본인의 기대 및 자기 확신과 어긋날 경우 급격히 과국적인 감정 상태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울, 불안, 공포 증상 유병률

구분	대상자(명)	백분율(%)
우울 증상		
정상	28	35.4
경미한 우울 증상	19	24.1
심한 우울 증상	18	22.8
매우 심한 우울 증상	14	17.7
불안 증상		
정상	22	27.9
경미한 불안 증상	19	24.1
심한 불안 증상	14	17.7
매우 심한 불안 증상	24	30.4
공포 증상		
정상	31	39.2
경미한 공포 증상	15	19.0
심한 공포 증상	10	12.7
매우 심한 공포 증상	23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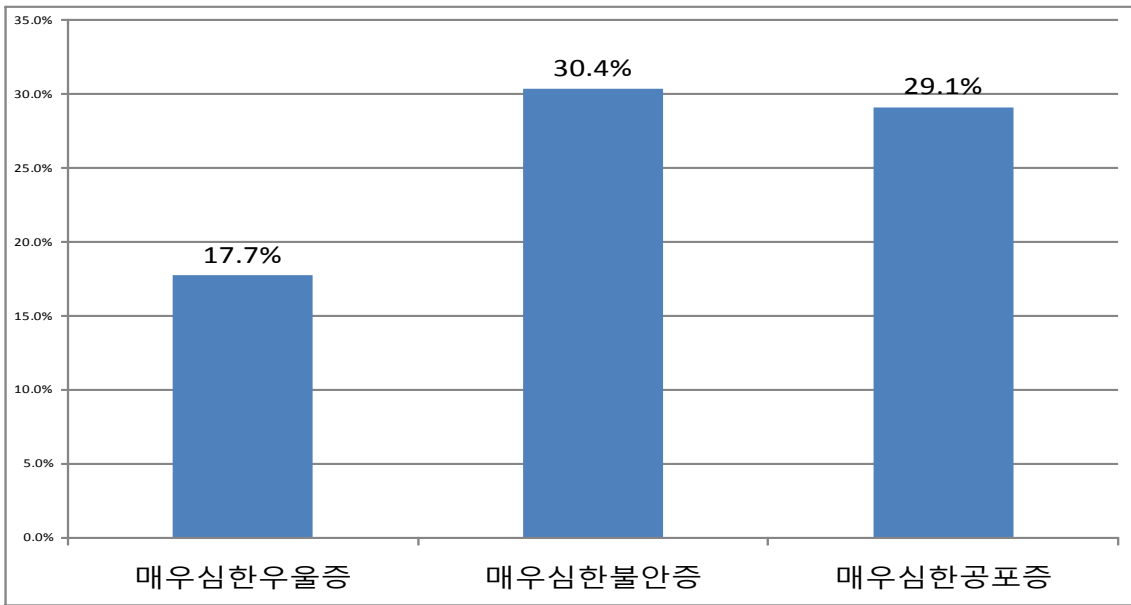


그림 33 매우 심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증상 유병률

그 중 특히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비율이 65.9%에 달했고,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는 문항에는 55.7%가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사에 걱정이 많다”, “매사가 힘들다”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각각 54.5%, 49.4%에 달하였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31.7%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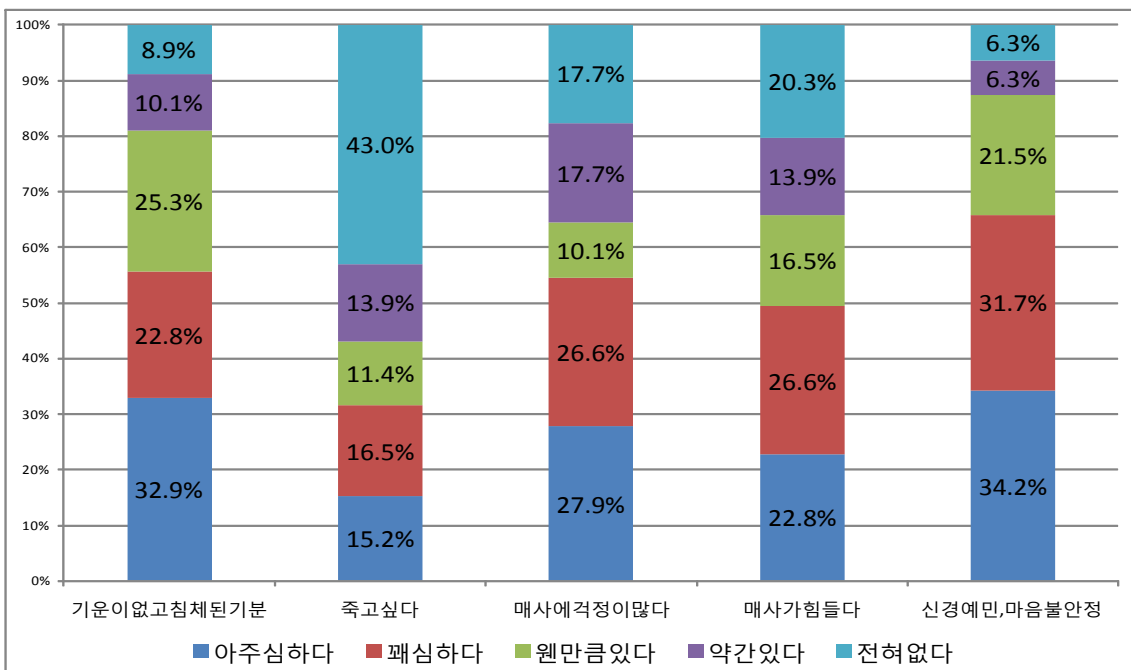


그림 34 특징적인 심리증상들

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주민들의 정신건강 피해 상태를 잘 드러내는 정신 진단 영역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전쟁, 자연재해, 폭행, 강간, 심한 사고 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일반인에서 유병률은 1~3% 정도이고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5~15%에 이르며, 어느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기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조사대상자들을 사건충격척도로 평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을 측정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들의 비율이 69.6%에 달하였다. 이는 전쟁 및 내전, 해고 및 농성 진압 과정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 시민들에 비해 4.1배, 레바논 내전시 레바논 시민들에 비해서도 2.4배 높은 증상 유병률이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사고, 전쟁, 해고 등의 심리적 외상과 비슷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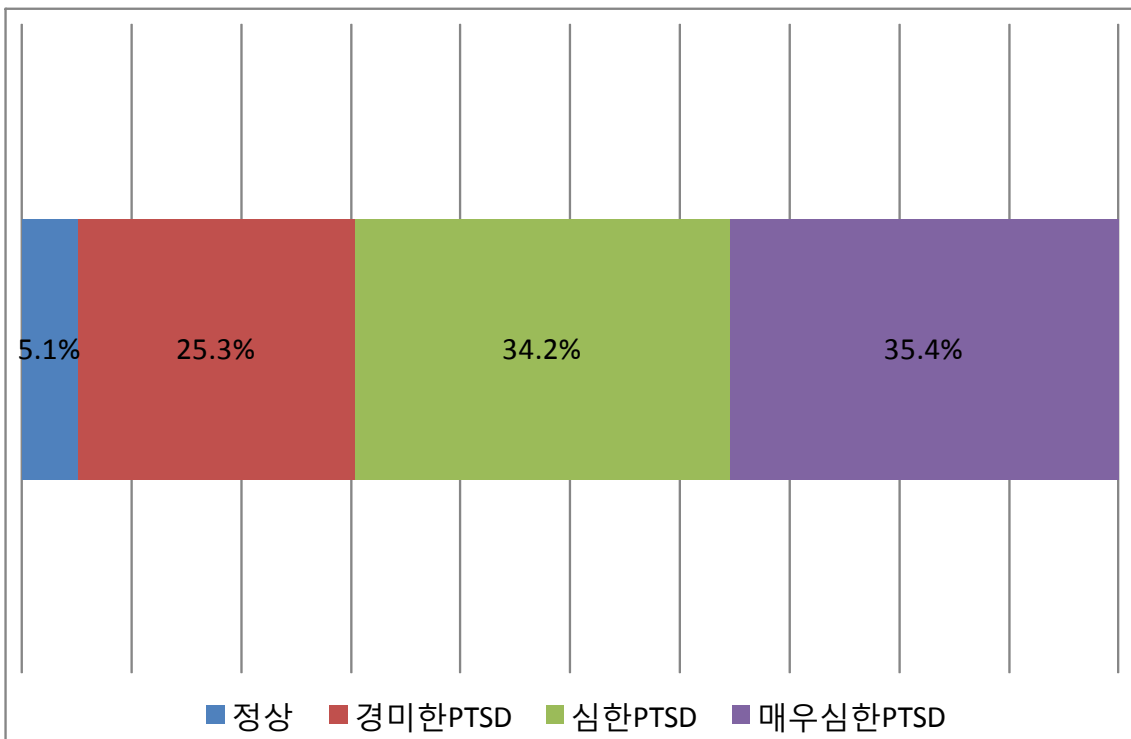


그림 3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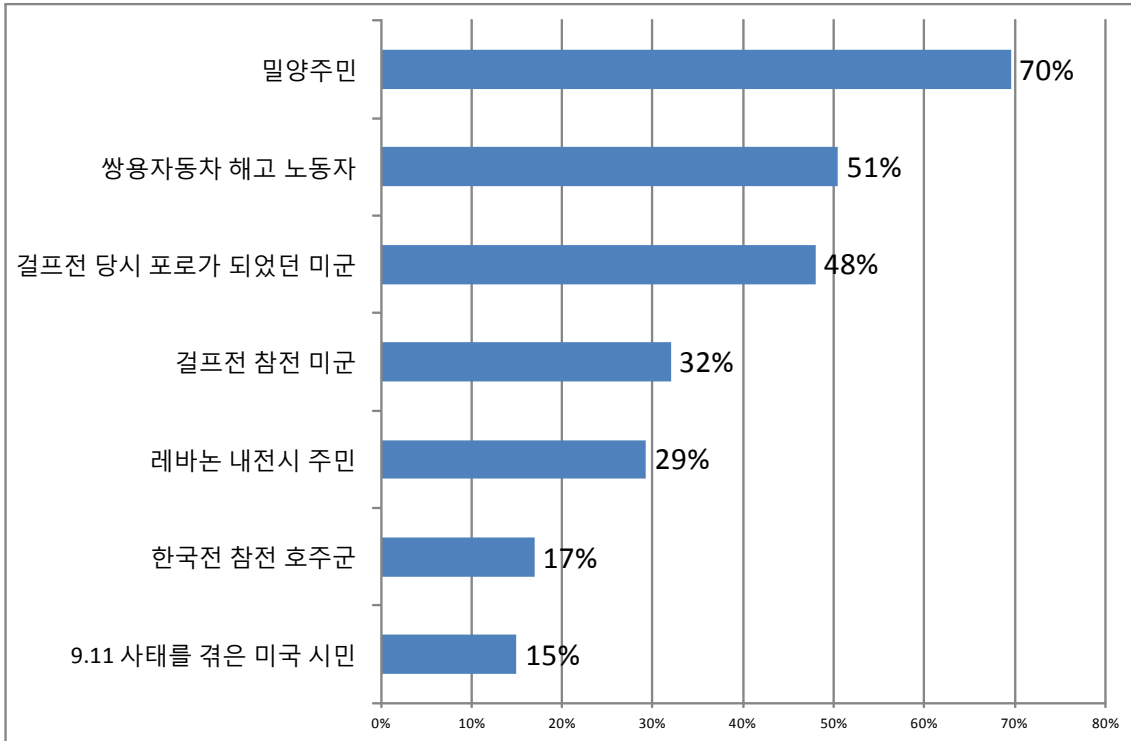


그림 36 전쟁, 해고 등의 상황을 겪은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 비교

※ 각 조사에서 활용한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사건충격척도 검사상 심하거나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 과정에서의 한전의 행태에 대한 배신감과 자괴감,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 찬성 주민에 대한 불만, 결국 송전탑에 세워질 것에 대한 불안, 공사 저지 과정의 힘듦, 낯선 이들에 대한 공포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들은 고향땅을 잃을 것 같은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파괴 두 항목이었다.

“조상들이 살던 땅, 고향을 못지킬 것 같아 안타깝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2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안타깝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3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1.5배 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고향 및 살던 땅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전 직원,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정신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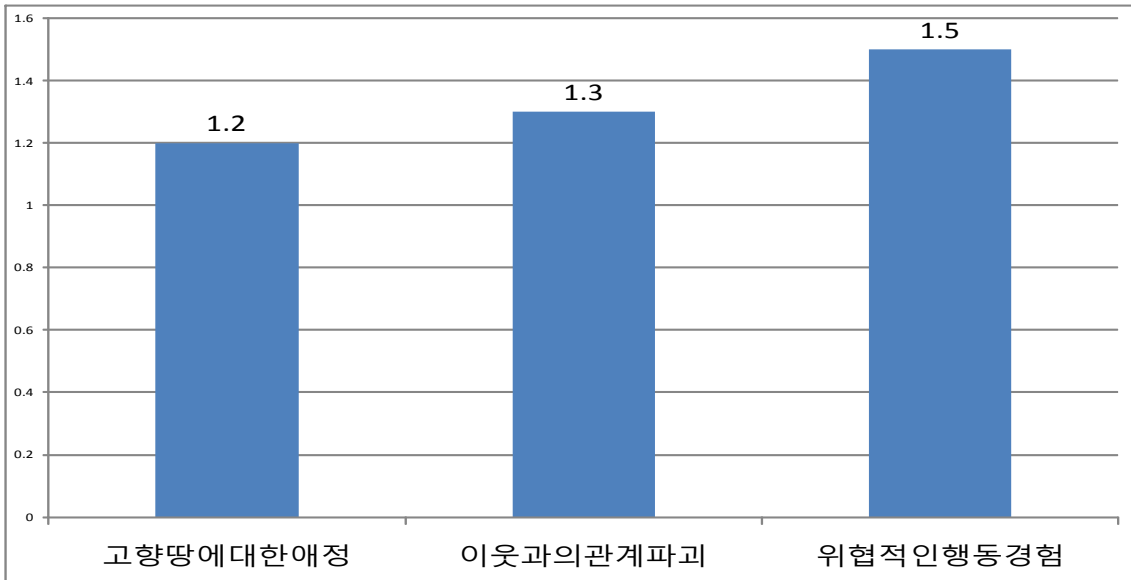


그림 3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관련 있는 인식 및 경험의 관련성의 강도

바. 신체적 건강 피해

조사 대상자 중 30.4%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각각 22.8%, 20.3%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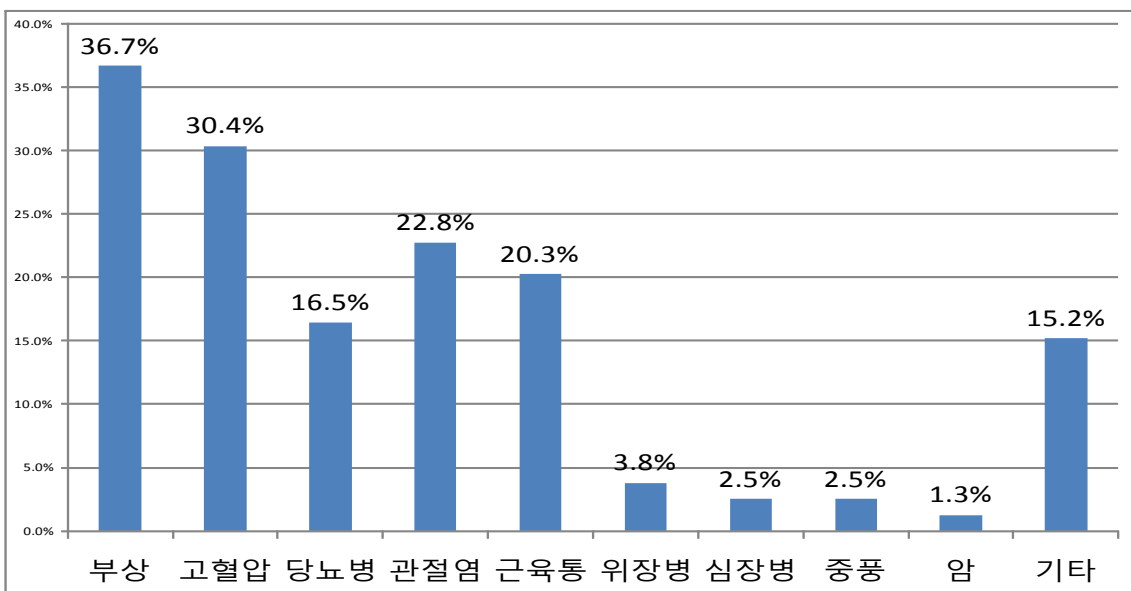


그림 38 현재 상병 및 송전탑 건설 갈등 중 부상 경험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이어진 갈등 상황은 신체적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은 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충격 및 흥분 등이 질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끼쳐 최악의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은 주민들의 신체 건강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산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인들의 무릎,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6.7%가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조사 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69.6%에 달하였다. 이는 전쟁 및 내전, 해고 및 농성 진압 과정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 시민들에 비해 4.1배, 레바논 내전시 레바논 시민들에 비해서도 2.4배 높은 증상 유병률이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사고, 전쟁, 해고 등의 심리적 외상과 비슷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 및 살던 땅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전 직원,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가장 중요한 정신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 고위험군은 40.5%,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48.1%, 공포 장애 고위험군은 41.8%였다. 한국의 평균적 노인 인구에 비해 1.4~1.5배 정도 더 높은 우울 증상 유병률이다. 조사 대상자들 중 우울감이 심한 이들보다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 상태 이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 과정 중에 있기에 강한 신념체계로 자기 무장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 상황이 본인의 기대 및 자기 확신과 어긋날 경우 급격히 파국적인 감정 상태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죽고

싫은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31.7%에 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은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산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인들의 무릎,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6.7%가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심리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더 악화되거나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III. 결론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1. 나오며

한전이 주도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제목과 같다.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미래는 파괴되고 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개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밀양 주민들은 사전협의과정을 포함, 모든 협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리고 법적 보상범위를 포함, 법외 보상 모두는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주민들이 살아온 삶과 땅에 대한 의미를 폄하하며, 생존을 위협하기에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주민들은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시공사, 용역직원들은 물리적 폭행과 성폭행, 모욕과 조롱 등의 행태로 연로한 나이의 주민들을 괴롭혔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곳에서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건강권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은 전쟁에 준하거나 더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밀양 765kV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요약한 내용들이다.

(1) 결정권의 부재, 협의과정은 주민 배제의 과정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과정은 이 사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 초 사업 계획단계부터 부지선정, 주민협의과정,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준수해야 할 절차인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식행위로 일관하였다. 충분하고 성실한 협의 없이 한전과 주민 측의 협상은 이어졌고,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등 많은 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정작 한전은 공사를 재개하고 강행하였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들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형사상 고소·고발을 일삼았다. 이와 같은 한전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극대화된 갈등을 참지 못하고 이치우 님이 분신하여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고, 죽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한 배제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이 반영된 주민의견수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밀양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국책사업에는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사람이 먼저이며, 사업의 전반적인 협의과정에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2) 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폄하한 보상의 비현실성

송전탑 건설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훼손되고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 피해를 보상하기에 현재의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상은 결국 금액으로만 환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가치의 상이한 차이가 발생한다. 기존의 보상체계 안에서는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의 법적 피해 보상범위를 일정한도 이상 넓힌다 한들,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다.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기존보다 보상 범위를 넓힌 보상책을 제시하려 했으나 그 역시 기존의 보상체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금을 더 받겠다는 것보다는 보상도 필요 없다,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것이며 이를 보상할 가치는 기존의 보상체계로는 규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보상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제 보상금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피해 지역의 손실 규모에 비해 법이 개정된들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 이미 주민들은 매매 등에서 자신들의 땅에 대한 재산가치가 0원이 되었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고공송전탑이 들어서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땅의 금전적 가치조차 시장에서 이미 평가받은 것이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는 농사짓고 살기에도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것

이며 삶을 영위하거나 노후를 보내기에 유해한 지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폄하한 보상금은 보상으로써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심지어 마을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유입되는 보상책들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전이 대안으로 제시한 13개의 보상책 역시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사업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보상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의식을 전혀 담지 못한 언급이며,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3) 마을 공동체와 관계의 파괴

한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송전탑 건설부지에서 먼 마을을 먼저 설득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한 주민들을 이간질했으며 마을주민들의 관계를 파괴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전체가 아닌 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 일부분의 사람들을 설득, 회유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수차례 마을 대표자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낳게 만들었다. 한전의 이러한 방식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한 고통을 주민들에게 가중시켰다. 어머니와 아들이, 사촌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갈려 등을 지게 되었다. 유언비어 유포와 고소, 고발로 인한 고통은 평화롭게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한전은 마을 공동체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진행의 유무와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의 회복적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한다.

(4) 한전, 시공사, 용역업체의 폭력과 조롱, 괴롭힘

한전은 2009년부터 최근 2013년 5월까지 수차례 공사를 추진하고 중단하길 반복해왔다. 한전 및 시공사는 공사를 막으려 현장에 온 주민들을 위협하고 모욕해왔다. 공사 현장이 주로 가파른 산속에 있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민 대부분이 고령 여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주로 남성 직원과의 충돌 상황에서 폭력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였다. 한전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이 완료될 시점인 2012년 2월을 앞두고 폭력은 더 극심해진다. 이 과정에서 용역이 투입된 바로 당일인 2012년 1월 16일, 절망한 고 이치우 님 분신자결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및 시공사는 공사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고, 벌목과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였다. 공사 강행과정에서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은 나아가 드신 주민들을 조롱하고 헐박,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공사강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안전 미흡과 감금, 폭력, 성폭력, 조롱, 위협,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

과는 단 한번도 없었다. 2012년 4월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이치우 어르신 분신 자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항의조차 무시하면서 언론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형식적인 사과만을 해서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을 뿐이다.

한전은 당사 직원과 시공사의 직원 등에 의해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5) 공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경찰, 과잉된 공권력의 폭력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과정에서 경찰은 한전과 주민 사이에서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갈등하는 양측의 중재자가 되지 못했으며, 주민들과 같은 일방적 약자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의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없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었다. 이치우 님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은 성급하게 단순 과실사로 사건을 처리하려다 비난을 받았고, 올해 5월 20일 공권력 투입이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언론과 주민의 확인 요청에 거짓말로 대응하였다. 이 외에도 형사 사건 조사에서도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과 이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시공사 사이에서 한전 측의 입장에 충실한 사건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이는 결국 주민이 경찰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장에서의 갈등을 키우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며, 과잉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경사가 가파른 공사 현장에서 주민을 밀친 행동이나 주민과 굴착기를 연결한 줄을 칼로 그냥 잘라버린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었다. 나아가 경찰은 주민에게 욕설을 했고, 폭우 현장에서의 보호 요청마저 외면하였다. 심지어 차양막이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존 욕구 해결마저 막았다. 경찰의 공권력 사용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과잉금지(비례성)의 원칙을 너무 쉽게 저버렸다. 주민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법집행을 하지 못한 경찰에게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은 갈등 현장에서 공정한 법 집행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 전쟁보다 깊은 상처

주민들의 건강권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69.6%에 달하였다. 전쟁 및 내전, 해고 및 농성 진압 과정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였

다. 전쟁보다 깊은 상처가 밀양 주민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살던 땅을 잃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었다. 또한 한전이나 시공사, 용역, 경찰들에게 당한 위협적이며 무례한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로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신체적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송전탑 건설 저지 활동 중 몸에 당한 부상보다 더 깊은 상처들이 마음과 몸 곳곳에 파고들어 있다. 한전과 정부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

(7) 결론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이 진행되는 9년 동안 주민들은 투명인간이었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었던 한 명의 마을 주민을 분신자결로 잃었다. 70세는 젊다고 할 만큼 연로한 노인들이 가파른 산허리를 타고 오르며 다치면서 절규하였다. 자식뿐인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 토목 작업을 하는 인부들, 용역 직원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심지어 밀양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생존의 문제를 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싸워야 하였다. 정작 송전탑 건설의 실시계획과 절차를 승인한 것은 정부였으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세 개의 정부를 지나면서 진행된 사업기간 동안 정부는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였다. 국회 역시 2013년 5월에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마을에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외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전과 한 치의 차이도 없었다. 국회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견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6월 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가 40일 동안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9년간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제야’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기에 40일 논의기간을 넘어서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논의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전문가협의체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협의체가 논의하기로 한 △기존 전력노선의 용량 증가 송전, △전력노선 우회, △지중화 등 대안 검토는 토론에 앞서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전문가 협의체 전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허위보고, 무성의한 회의준비, 핵심자료 제출과 답변 거부 사례를 설명하였다. 특히 밀양 송전탑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선로 증설, 우회노선 검토와 관련해 한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실제이용률과 달리 전력거래소 시뮬레이션 수치를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⁵⁰⁾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7월 28일 진행된 전문가협의체 현장조사 역시 야당 추천 위원들

50) 경남도민일보, “한전, 송전탑 대안 찾을 의지 없나”, 2013. 6. 19.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44>

은 주민들 만나는 일정을 늘리고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0일간의 전문가 협의체가 진정성 있는 논의 자리인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논의와 지금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협의체 이후라도 성의 있고 실제 있는 협상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대량 소비주체인 도시의 편리를 위해 농촌거주민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전력수급체계 자체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건립 등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의 전력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금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⁵¹⁾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는 탈핵 반원전의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이미 불량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원전사고로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에너지 정책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고리핵발전소를 포함하여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반경 20km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부산·울산·동부경남 지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 밀집지역이 된다. 밀양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적인 위기를 고려하는 위기 국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 작업을 통해 다양한 인권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권고 사항을 통해 이번 사업기간내의 인권침해가 해결되기를 요청한다.

2. 권고

한전과 정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조사단은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국책사업 갈등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의 미공개와 왜곡, 정부의 갈등 상황 방치가 갈등을 야기·심화·확대시키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는 붕괴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부 등 관계자들은 그 동안 강행되어 온 사업으로 인

51) 이 보고서는 환경생태와 관련한 권리문제를 담지는 못하였다. 밀양이 던지는 환경생태권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소망해 본다.

해 붕괴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또 다른 반복이기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수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권고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 (1)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부품 납품업체 및 부품 검증업체 임직원에 의한 원전 부품 납품 비리로 인하여 신고리 3, 4호기의 제어케이블, 수소제거기, 내진설계 관련 부품까지 그 성능과 안전성이 의심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업운전 시점이 최소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40일 동안의 전문가협의체 논의 기간을 넘어서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 동안 관련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함
- (2)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정부는 한전으로 하여금 한전, 마을 주민 그리고 양측이 선정하는 전문가들이 동수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거나 혹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협의체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위 협의체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타당성, 주민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피해, 신고리 5, 6호기 증설의 적실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 추진 시 추진방법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 (3) 국회는 위 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는 공사 재개와 관련된 어떠한 법안의 의결이나 예산편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 (1) 정부는 공권력의 투입과 남용을 중단하고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2) 경찰은 사업현장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집행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함
- (3) 정부, 한전 및 시공사들은 자신들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와 관용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 (4)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회는 정부 대책과 예산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 (1) 국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여야 함
- (2) 정부는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게 국책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참고자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 명 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구간 : 신고리 원전 ~ 765kV 북경남 변전소
- 사업위치 :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
- 사 업 비 : 5,175억원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2007. 11) 후 ~ 2011. 5(선로가압 : 2010. 12)
- 시설규모 : 길이 90.535km, 첩탑 162기(밀양구간 길이 39.15km, 첩탑 69기)
- 승 인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8(2007.11.30)
- 밀양시 5개면 송전탑 경과지 편입 위치 및 면적

구분	편입지		계	위치(경과지)				
	필지	면적(m ²)		단장면	산외면	상동명	부북면	청도면
첩탑	90	30,005 (155명)	69기	20	7	17	7	18
선로길이 (선하지)	622	1,406,942 (579명)	39,157km	11,055	4,549	10,108	3,419	10,026

- 5개 시군별 공구 및 사업 규모

공구	구간	선로 길이(km)	첩탑 기수	행정구역
1공구	발전소 ~36(11-1, 34-1, 34-2, 34-3 포함)	20,576	39	울주군 5기(No. 1~3, 5, 6)
				기장군 34기(No. 4, 7~35)
2공구	No. 36~59	13,073	23	양산시 45기(No. 36~80)
3공구	No. 59~87	15,512	28	밀양시 69기 (No. 81~149)
4공구	No. 87~112	14,715	25	
5공구	No. 112~136	14,322	24	
6공구	No. 136~변전소	12,337	23	창녕군 9기(No. 150~158)
합계		90,535	162	5개 시, 군

밀양 송전탑 갈등 상황 일지

2001년~2007년 주민설명회, 사업 승인 진행

- 1 **부재했던 주민과의 협의:** 이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불 사항은 2005년 한전이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한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충분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한전 측은 충분한 논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았다.

~2005년 8월

- 2000년 8월 설비 계획이 확정되는 등 부지 선정이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한 채 진행되었음. 2004년 3월~2005년 3월 경과지에 측량을 완료, 철탑 자제 운반계획 수립, 2006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지연).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 2005년 8월 밀양시 경과지 면별 주민설명회가 개최됨으로써 5개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대해 최초로 인식하게 되었다(한국전력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참석한 인원은 단장면 50명, 상동면 38명, 부북면 10명, 청도면 32명 밀양시 총인구 117,732명의 0.1%에 해당(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면의 인구 21,069명으로 계산하면 0.6%)한다. 765가 건설되는 시점에서 송전선로가 가장 높은 초고압이고 큰 규모임을 알았음.
- 한전 측(송전건설팀 손○○ 차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 2005년경 밀양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제기된 주민이견 중 수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5년 11월 밀양 최초로 집회를 가짐

- 상동면 옥산리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음.

2007년 11월, 한전 측 정부의 사업 승인 받음

- 한전이 산업자원부에 사업 승인을 의뢰하였고 산업자원부(전 지식경제부)는 중앙 11개 부처의 협의를 얻어 2007년 11월 30일에 사업 승인을 내림.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갈등조정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까지 운영됨(갈등조정위원장 이선우 경실련 사단법인 갈등해소센터 이사장+주민대표 3인+한전 2인+지식경제부, 경남도, 밀양시

관계자 각 1인). 갈등조정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까지 운영.

- 갈등조정위를 통해 논의 진전 없었음. 전문가 초청했어도 한전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함. 권익위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조정위 운영 기간이 끝나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도 한전과 주민의 대치는 계속됨. 2010년 8월 3일 현장사무실 설치 문제로 시공사와 주민대책위 대치함. 그리고 한전은 이 기간 직무유기 혐의로 아래처럼 밀양시장 등을 고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함.

2010년 8월 16일 한전, 밀양시장 등 고소, 토지강제수용 절차

- 2010년 8월 16일 한전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아 공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한전에서 엄용수 밀양시장과 경제투자과장, 김충식 창녕군수와 경제도시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고소. 8월 29일에는 손해배상(약 20억) 청구 소송을 제기
- 2010년 10월 25일 밀양시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위한 토지수용 재결공고 및 열람을 이행함.(2010년 1월부터 3차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행 요구 및 5차례 독촉 받음) 주민들, 밀양시의 일방적 열람공고 허용에 강력 항의함. 밀양시는 2010년 11월 8일까지였던 열람공고를 2011년 1월 17일까지로 변경했고, 1월 28일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결과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 주민들 2011년 2월 8일 31,133명 서명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심의보류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보류됨.
- 밀양시가 토지수용 재결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자 10월 26일 한전에서 고소 취하함.

2011년 4월 다시 공사 강행

- 2011년 4월 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하면서 한전의 손을 들어 줌. 4월 4일 오전 8시부터 5개소 철탑부지에서 공사 강행함.

2011년 11월 시공사에서 주민들 무더기 고소

- 2011년 5~7월 한전-주민 간 대화위원회, 8~10월 경실련 주재 보상협의회 등이 운영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음. 이 기간에도 주민들에 대한 폭력, 고소 등을 통한 압박이 계속됨.

2012년 1월 16일 고 이치우 님 송전탑 반대 주장 분신

- 2011년 10월 말 협상이 결렬되고 11월부터 공사가 강행됨. 이날 오전 4시께 한전 소속 감독관·시공사인 동양건설·하도급 업체 직원 1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이 밀양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주민이 막아선 곳을 뚫고 들어와 공사를 강행

- 오후 8시 이치우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분신하심.
- 1월 17일 이후 공사 중단됨.

3월 7일 공사 중단

- 대책위와 한전 측이 3월 7일부터 석 달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함. 분신 이후 50여 일 만인 3월 7일에 이치우 어르신 장례식 진행.
- 3월 17~18일 탈핵 희망버스 200여 명 밀양 방문

6월 11일 공사 재개

- 합의 기간이 끝나자 한전 측이 곧바로 공사 강행.
- 한전, 밀양 송전선로 건설 대책위원회 발족
-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실시되어 주민들이 진입하려 하였으나 저지당함.
- 한전, 밀양시 박○○ 변호사 대리인으로 주민 3명에게 10억 손배소, 주민 13명에게 매일 100만 원씩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함. 10월에 한전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하였으나 시공사 측의 고소는 취하되지 않음. 당시 주민 210명을 고소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고 함.
- 7월 23일에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초생달’, 통진당 김제남 의원실, 대책위 주최로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 대회’를 개최함.
- 공사 저지 과정에서 실신하는 분 등이 늘어나자 한전에서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

9월 24일 공사 중지

- 2012년 10월 9일~11월 9일: 송전탑 반대대책위-한전 실무협의 3회 진행
- 2013년 1월 28일 = 한전, ‘전력수급불안’을 이유로 공사 재개한다는 입장 밝힘.
-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조경태 의원 주관으로 주민과 한전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소득 없이 끝남.

2013년 5월 공사 재개

- 15일에 한전이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한 후 18일에는 사장 명의로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함.
- 20일에 한전이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함. 공사 현장은 이후 9곳까지 늘어남.(단장면 4곳, 상동면 3곳, 부북면 위양리, 산외면 회곡리)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원 500여명 각 현장 투입됨.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건 8년간의 싸움 중 처음이었음.
- 주민들은 경찰과 한전 측의 공사장 접근 통제를 피하기 위해 새벽 3~4시 사이에 공사 현장에 도착한다고 함.
- 공사 재개 후 20명 부상
- 밀양경찰서가 윤○○(75) 님과 이○○(82) 님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 통보함.

- 28일에 호우로 공사가 중단됨.
- 5월 29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의 중재로 정부 추천 인사 3명, 밀양 주민대책위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전문가협의체 구성 합의. 한전 공사 중단. 전문가협의체의 논의 주제는 신고리 3호기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우회 선로, 밀양 송전탑 구간 지중화, 그 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실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2001년 5.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5.~6. 5.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2005년 11.		밀양 상동면 주민 최초 반대집회 개최
2007년 3.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신청	
10.	환경영향 본평가 협의완료	
2008년 7.		765kV백지화밀양시민대회 (1차) 집회
8.	공사착공	765kV백지화밀양시민대회 (2차) 집회
12. 10.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투쟁 집회(밀양, 창녕, 양산, 진도), 한국전력 본사 앞
2009년 2. 10.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및 토지강제수용 반대 집회
3. 18.		전국 송변전건설반대 대책위 출범 반대 집회(밀양, 창녕, 양산, 진도, 당진)
7. 2.~5.	•한전, 1차 공사 추진. 별목 완료(2기) •밀양시 등의 요청으로 작업 중단	
8. 6.	•한전, 2차 공사 추진. 별목 시도(2기) •폭행 발생으로 작업 중단	
9. 11.		범밀양시민연대 발대식 및 총궐기대회
9. 15.~17.	한전, 3차 공사 추진. 별목 완료(1기).	밀양시민연대 가을추수 전까지 작업 중지 요청
9.	신고리1호기 시운전용 신고리-신포항간 345kV 임시선로 구성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4차 공사 추진. 별목 완료(1기) •폭행사건으로 작업 중단 	
10. 12.		밀양시민연대, 갈등해소협의체 운영 제안
10. 14.	밀양시 주관 제2차 행정지원실무협의회에서 한전에 협의체 참여 권고: 밀양시민연대 요청으로 경실련협의체 운영 주관 수락	
10. 21.		밀양 이동신문고 운영 시 밀양시민연대 협의체 구성 요청
11.	건설 지연 대책 수립 시행	
11. 27.	갈등조정위 사전실무협의 개최 - 규정(안) 협의 및 확정	
12. 11.~ 2010년 6.28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 운영(국민권익위 주관. 6월 28일 합의서 서명) - 경실련2, 주민3, 한전2, 국회/지경부/경남도/밀양시 각1명	
7. 20.		주민대표 보고대회(투쟁일정 및 향후 투쟁방안)
8.	한전, 밀양시장과 창녕군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10.	밀양시,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시행	
11.	보상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 경실련 주관, 본회의 9회(11. 12. 26일), 실무회의 12회(12.1월)	
12.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5차 공사 추진. 별목 완료(2기) •조경태 의원 중단 요구에 따라 작업 중단 	
12.	신고리-고리원전 간 345kV 2회선 송전선로 건설완료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2011년 4.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6차 공사 추진. •별목7기추진. 주민과 대치/단식 농성/현장 미사/조경태의원 요구에 따라 작업 중단 	
5. 2.~7. 4.	밀양 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 운영 (18회)	
7.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7차 공사 추진. 별목 6기 추진 •주민과 대치/국무총리실 항의방문/보상협의 조건 작업 중단 	
7. 18.~21.		주민 항의(밀양, 창녕), 국무총리실
8. 4.~10. 4.	제3자 중재 밀양지역 보상협의회 운영 (7회)	
9.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8차 공사 추진. 기초완료(1기), 문화재시굴조사(1기), •제3자 중재/보상협의 재개 조건 작업 중단 	
9.	적정 보상 제도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10. 29.	밀양시 청도면 민원협의 완료	
11. 1. ~ 2012. 2. 17.	한전, 9차 공사 추진	
12. 6.	청도면 합의, 본사을급특수보상심의회 원회 가결	
2012년 1. 16.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입구에서 이치우 님 분신자살에 따른 공사 중지	
1. 17.	한전, 밀양 지역 공사 중단	
1. 18.~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조문(2차례) 무산 •2월 7일 CEO 면담 성사 	
1. 20.	시신 병원 안치 후 시청 앞 분향소 설치 운영 시작, 유가족 절차를 장례위에 위임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2. 1.		밀양 765kV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출범
2. 7.		밀양송전철탄 백지화 경남대책위원회 발족
3. 7.		한전과 합의하여 장례식 거행(한솔병원)
3. 17.		밀양송전선로 반대집회, 탈핵 희망버스(1200명)
4. 12.~	제10차 공사 재개(청도면)	
4. 16.		분신대책위 반발 및 공사 중지 요구
4. 17.		분신대책위, 청도면 소태 저수지 독위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5. 14.	한전, 기초공사 50% 달성 밝힘	
6. 7.	한전, 밀양시 산외면 일대에 대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답사	
	108-3번 철탄공사 업체와 약산사 주지스님 성폭행사건 발생	
		분신대책위, 경과지4개면 주민단결대회 개최
6. 11.	한전, 밀양시 단장, 산외, 상동, 부북 등 4개 면의 고압송전선로 공사 재개 선언, 일부 반발이 적은 지역부터 공사 재개	
6. 12.		분신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답사과정에서 약산사 주지스님과 충돌사실 밝힘
6. 18.~19.	한전, 반대 지역주민들에게 협상을 요청했으나 거부	
6. 25.		2012 생명평화 초록농활, 밀양시청 앞 발대식을 통해 주민과 연대투쟁 시작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6. 26.		분신대책위 등, 2011년 11월에 발생한 약산사 주지승려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6. 27.	한전, 지역주민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타당성 재조사 필요주장
6. 28.		반대주민, 밀양시청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미뤄달라는 집회 개최
6. 29.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70여명 참가, 기자회견 후 공청회장 진입하려 했으나 저지당함. 주민 2명 부상입고, 밀양병원 입원치료	
7. 2.	송전선로 시공업체, 밀양시 단장면 태릉리 용회마을에서 공사 현장 진입 시도. 주민과의 대치 끝에 무산.	
7. 3.	한전, 밀양시 상동면 중산 송전선로 공사 현장(109호)에 대형헬기를 통한 장비수송 실시. 이에 반대 측 반발.	
7. 23.		민주통합당 '초생달'모임, 김제남 의원실 주최로 '밀양 송전탑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7. 27.~31.		엄○○(73), 양○○(64), 송○○(57) 지역주민 송전탑 반대 중 실시 후송
8. 1.		'폭염속 공사중단 및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호소하는 무기한 릴레이 단식' 기자회견(밀양시청 앞)
8. 13.		'밀양 송전탑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8. 14.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61기 중 기초 공사 100기 준공과 기장군 지역 33기 송전철탑 기초 공사를 달성하였다고 발표.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8. 25.	시공업체 직원, 밀양시의원 문정선 의원 성폭행사건 발생	
9. 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밀양 송전탑 관련 현안보고	
9. 6.		밀양 여성시의원 성폭력사건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밀양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부산경남개발처 앞)
9. 7.		단장면 동화전 마을 인근 송전탑 공사 예정지(96번)에서 시공사 인부들이 단장면 주민대책위원장(김○○(40))을 폭행, 감금하는 사건 발생
9. 24.	한전, 추수를 위한 농번기와 추석으로 공사 일시중지 결정	
10. 5.	김중겸 한전사장, 주민대책위원회 및 민주당 농성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분신대책위 ‘국감대비 쇼’비판
	한전, 밀양지역주민 고소고발 취하	
10. 9.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대표와 한전, 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첫 회의 개최	
10. 17.	2012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한수원 제외) 국정감사	
10. 30.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와 한전의 2차 실무회의 개최, 이견 못 좁혀	
11. 9.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명칭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로 변경
	한전과 송전탑 반대 밀양지역 4개면(부북·상동·단장·산외) 주민대표들, 3차 실무회의 개최, 난항.	
	한전,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	
11. 14.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창녕군 구간 9기 송전철탑 기초 최종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 (152호)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11. 27.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청도면 요고리 133호 철탑기초를 완료, 준공기념행사.	
12. 4.		“밀양 765kV 해법을 찾는다!” 4:4 맞짱토론(김제남 의원실, 조경태 의원실, 녹색당 주최)
2013년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18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원 500여명 각 현장 투입 •5곳 7개 철탑 공사 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장면 고례리 84~85번 철탑 -단장면 바드리 89번 철탑 -상동면 도곡리 109번 철탑 -상동면 옥산리 여수마을 124번 철탑 -부북면 위양리 및 평밭마을 127번 철탑, 132번 철탑 / 헬기에 몸을 묶고 시위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위 긴급기자회견문 발표 5월 20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상황 •부북면 대항리 이○○(82)/시위 중 혼절, 심장통증 호소, 큰 병원이송 대기중 •상동면 고정리 서○○(81) / 인부들과 대치하다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진 인부들에게 깔려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 •상동면 고정리 이○○(74) / 인부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다리에 큰 부상, 헬기로 후송됨 •상동면 옥산리 박○○(68) / 인부들과 몸싸움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부북면 위양리 이○○(70) / 인부들과 몸싸움중 손을 다쳐 병원 이송 •단장면 동화전마을 하○○(82) / 시위중 혼절하여 병원 이송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곳으로 공사 현장 확대 •송전탑 52기 중 5기 지주 미동의 상 태임이 알려짐 •밤 9시에도 공사 강행(밀양 단장면)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진행(지원책 중 심 논의) •산업자원부, 공사 계속 의지 표명(지 중화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자 2명 발생(밀양 단장면 바드리 송전탑 건설 현장/ 손○○님(62세), 박○○님(60세) /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침) •주민 5분이 쓰러짐(권○○, 정○○, 박○○, 석○○, 이○○)
5. 23.	한전 부사장이 밀양 지역 주민 보상 지원책 발표(UAE 원전 수주 관련 발 언, 천주교 반핵 단체가 주민 세뇌한다 고 말함.)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면 1곳, 부북면 1곳의 작업장 부 지 사용 허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받 아냄. •한전 부사장 사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자 2명 발생(바드리 송전탑 건 설 현장 / 임○○, 엄○○ / 임 할 머니 찰과상, 엄 할머니 혼절) - 공사재개 이후 현재까지 총 15분 부상
5. 25.	현장 8곳(단장면 4, 상동면 3, 부북면 1)에 총 90~150명의 인원 투입했으나 공사는 못함.	
5. 26.		부상자 2명 발생(도곡리 / 최○○ / 혼절)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현장이 9곳으로 늘어남. •주말에 철수한 경찰 병력 재배치 •오후부터 폭우로 공사 중단 •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지원 결정 에 반대 의견 표명 	부상자 2명 발생(이○○-고레리-앞니 부러짐과 허리부상, 서○○-위양리-다 리부상)
5. 28.	폭우로 공사는 중단	상동면 옥산리 주민 10여 명 전날부터 현장에서 밤샘농성을 하다가 공사 중 단 확인하고 내려옴
5. 29.	한전 작업 중단한다고 했으나 일부 현 장에서 벌목 등 작업 재개 시도(200명 인력 투입, 단장면 4곳, 상동면 3곳, 부 북면 위양리, 산외면 희곡리 등 9곳 재 개)	공사 재개 이후 현재까지 총 20분 부 상

일자	한전 및 정부, 국회의 대응	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
5. 29.	여야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전문가협의체 구성(한전, 국회, 반대대책위 각 3인) 합의. 협의체 운영 기간인 40여 일 간 공사 중단.	

정보 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청구 대상 기관	청구 내용	회신 결과
한국전력	밀양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귀 기관과 계약한 시공사의 명단과 계약서 (계약서에 별첨문서가 있을 경우 별첨문서 포함)	비공개
	밀양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승인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한 내용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공개 -고지 횟수는 해당 없음으로 답변 (관보 고시)
	밀양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서 주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	매뉴얼 없음
	위의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의 내용과, 활용한 사례 (매뉴얼로 한전 직원이나 시공사 직원, 용역업체 직원 교육을 실시했거나, 매뉴얼을 업체에 보낸 적이 있는지 여부)	해당 없음
	각 마을별 마을발전기금으로 보상된 내역, 용처	비공개
	철탑부지 및 선하지 보상금 지급시 보상 근거 (기준)	공개
	공탁 산정기준, 현황(액수), 수령 여부, 수령 여부의 비율	일부 공개
	주민설명회 진행 현황, 밀양주민 참여 인원, 설명회 내용 (설명회 영상, 자료집 등)	공개
	밀양 지역 765kV 송전탑건설 공사 지도와 변경 지도 및 변경사유 (송전탑 80번~133번 구간)	공개 -변경도면과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경찰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에 제출된 [경비원 배치 신고서] 및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서]	공개
	귀 기관이 위 배치업체로부터 받은 문서 및 위 배치업체에 보낸 문서 일체	해당사항 없음
	귀 기관이 위 배치업체에 보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해당사항 없음
	한국전력과 시공사 측이 귀 기관에 보낸 [시설물 보호 요청서]	해당사항 없음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관한 귀 기관의 경비계획	비공개
국가인권위원회	5월 20-22일에 귀 기관이 실시한 현장 조사 보고서	비공개

농민 권리 보장에 대한 최종보고서 중 <농민인권선언>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년 2월)

세계 인구 전체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먹을거리가 생산되나 정작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 13/4에서 농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16번째 Session에서 보고할 것을 자문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사전조사와 함께 가입국 및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자문을 구해왔다. 몇 차례 의견과 논평 전달 과정을 거쳐 <농민 권리 보장에 대한 최종보고서>⁵²⁾를 2012년 2월 24일 유엔인권위원회 19번째 세션에서 채택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이를 보호·증진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모델 역할을 기대하며 보고서 끝에 <농민인권선언>을 제안하였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조는 농민의 정의, 2, 12, 13조는 그들의 기존 권리의 재확인, 4, 5, 6, 7, 8, 9, 10, 11조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농민인권선언> 부분만을 발췌·번역하였다.

제1조 농민의 정의

1. 농민은 땅의 남녀로서, 식량 생산 또는 여타의 농업 생산물을 통해 땅과 자연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다. 농민은 땅에서 직접 일하며 무엇보다도 가족 노동과 여타의 소규모 형태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한다. 농민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고 현지의 지형과 농업-생태 시스템을 돌본다.
2. 농민이란 용어는 농사, 소 사육, 목축, 농사와 관련된 수공업 또는 농촌 지역에서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땅에서 일하는 원주민이 포함된다.
3. 농민이란 용어는 또한 땅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이 무토지자로 간주되며 생계 보장에 어려움을 겪을

52) <농민 권리 보장에 대한 최종보고서>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en.pdf

가능성이 있다: 1.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농업 노동 가구, 2.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지역 가구, 땅이 없으며 가족 구성원이 낚시, 현지 시장에 널 수공업품 제작,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에 종사, 3. 목축, 유목, 화전 농작, 사냥, 수집을 하는 기타 농촌가구, 그리고 유사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

제2조 농민의 권리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법에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자유롭고 모든 여타 사람들과 동등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특히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 의사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식량 안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농민 스스로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정할 권리로 구성된다.

제3조 삶과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

1. 농민에게는 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온전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퇴거당하지 않을, 처벌되지 않을, 또 자의적으로 체포되지 않을 권리이다.
2.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3. 농민에게는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농민과 그의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4. 농민에게는 적절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적절한 가격의 음식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보존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에게는 그들 자신의 농업 생산물을 소비하고 그 생산물을 그들의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들의 농업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6. 농민에게는 안전한 식수, 위생, 교통, 전기, 소통과 여가활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
7. 농민에게는 적절한 주거와 의복에 대한 권리가 있다.
8. 농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농민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 그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경우라도 이 권리가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의약품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10. 농민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화학 해충제와 비료 같은 농업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 여성 농민에게는 가정폭력과 물리적, 성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2. 여성 농민은 그들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와 그들의 신체를 상업적 목적으로부터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3. 농민은 그들이 원하는 자녀의 수를 결정할 권리와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피임 방법에 대한 권리가 있다.
14. 농민에게는 그들의 성적, 생식/출산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 땅과 구역에 대한 권리

1. 농민에게는 그들의 주거와 경작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2. 농민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그들 자신의 땅에서 일할 권리와 농작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그들의 구역에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업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사용되지 않는 땅에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 의존하고 일하며 소유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숲과 어장을 경영하고, 보존하고, 이익을 취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에게는 종신 보유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땅과 구역에서 강제적으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보가 주어진 채 자유롭게 선행된 농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한 정의롭고 공평한 보상 합의나 보상 선택권 없이 농민들을 재배치할 수 없다.
6. 농민에게는 토지 개혁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라티퐁디아(대토지소유제)는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땅은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해야만 한다. 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 소유에 대한 한도가 필요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

제5조 씨앗/종자에 대한 권리와 전통적인 농업 지식과 방식에 대한 권리

1. 농민에게는 그들이 경작하고자 하는 종자의 종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에게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협하다고 간주하는 식물의

종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농업의 산업적 모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에게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대한 그들의 지역적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농업, 어업, 축산업 시설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6. 농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의 생산물과 종류, 농업/어업/축산업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 농민에게는 그들의 고유한 기술이나,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고려해 그들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8. 농민에게는 그들의 고유한 종자를 경작하고 발전시킬 권리와 그들의 종자를 교환하고 배포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농업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

1. 농민에게는 신용거래에 대한 권리, 그들의 농업을 위해 필요한 물질과 도구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보조, 생산 도구,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적합한 기술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에게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 통제되는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안에서 농업 생산과 관개를 위한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농민에게는 그들의 땅과 구역에서 수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에게는 그들의 생산품을 지역 시장에서 팔기 위해 필요한 유통, 건조, 저장시설의 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지역적, 국가적 농업 예산의 계획, 재정, 채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정보에 대한 권리

1. 농민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과 기술을 포함해 필요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과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에게는 유전적 자원의 보존에 대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 8조 농업 생산물을 위한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자유

1. 농민은 그들의 농업 생산물을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선점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그들의 생산물을 지역 시장에 팔 권리가 있다.
3. 농민에게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에게는 그들의 생산품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그들과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농민에게는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생산품의 품질 평가 제도에 대한 권리가 있다.
7. 농민에게는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의 상업화 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제9조 농업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

1. 농민에게는 농민의 문화와 현지의 농업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농업에서 현지 지식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현지의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농민의 숭고함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

1. 농민에게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 보존,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2. 농민에게는 식물, 식량, 의약품을 포함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에게는 지역 농민 공동체에 의해 소유, 보존, 발견, 발전 또는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 자원 및 지식에 대한 지적 재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에게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설립된 (품질)보증 체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농민 연합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 보장 체계는 반드시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생태적 부채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땅과 지역에 대한 역사적이며 현재의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현지와 지역·전국·국제적 차원에서 이의 제기·청원·동원을 포함하여, 전통과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농민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기타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화적 문헌·지역 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사법(제도)에 접근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에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민은 유효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위해 공정한 사법 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농민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참고자료]

마가렛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⁵³⁾ 일부 발췌 (2013년 5월 29일 ~ 6월 7일)

이번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방한 기간 중 파악한 내용과 일부 이슈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는 1차 보고의 자리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집한 자료와 문서들을 검토한 후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방한기간 중 저는 한국전력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이번 방한 중, 저는 밀양 등도 방문해 밀양시장을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인권옹호자들 및 활동가들을 만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눠 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방한을 지원하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수십 년간 급속히 변모해 온 한국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을 뒤로 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은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여준 역동성과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옹호자들은 다소 양극화된 환경에 놓여 있어 때로는 그들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침해는 물론,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²에서 천명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슈들 중 일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보고서에 담길 것입니다.

… …

방한 기간 중 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 다양한 사례 및 상황과 경찰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53) 마가렛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 사전조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423&LangID=E>

(한글)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EndMissionStatementKoreanVersion.pdf>

다. 평화적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해산되었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옹호자들과 주민들이 폭력과 체포를 당했으며, 한국에서 이러한 옹호자들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외국인 옹호자들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

환경권옹호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옹호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주로 평화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밀양과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개발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과정과 주민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이나 사측이 고용한 민간경비용역이 주민에 대해 위협, 괴롭힘 및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평화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당하거나 막대한 피해보상청구 및 재산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 활동가들이 강제 출국 당하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지역사회 내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대화를 시작 및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이러한 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에 사전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아직 비준되지 않은 UN국제조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내용을 국내에 알리고, 옹호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 사회에서 옹호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대화의 정신과 건설적 비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 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와 과중한 처벌을 금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 유엔 기구와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및 사찰에 대한 혐의와 보고에 대해 합당한 조사를 진행하여 범법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및 공안요원을 대상으로 집회 대응 시 합당한 물리력 행사 및 옹호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조사하며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그 관련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

-시설경비업체의 운영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침해 관련 모든 혐의를 조사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로자들과 시설경비업체의 행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시설경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자들의 역할을 포함하여 갈등 해결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전 조사 내용 및 권고사항은 2014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의 골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행일:** 2013년 7월 3일

■ **발행단체:**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조사 참여자

◎ 인권침해 조사단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서창호, 아요, 이정건)
 - 인권운동사랑방(민선, 초코, 미류)
 - 천주교인권위원회(강은주, 장현정)
 -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손승현, 안정아, 최하늬)
 - 민변(박주민, 신훈민, 김경민, 김형일, 김경미)
 - 다산인권센터(박진, 안병주)
 - 울산인권운동연대(최민식, 박영철, 안미경)
 - 희망법(김동현, 서선영)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사 : 강종문, 김승열, 우석균, 이상윤, 이정화, 정형준, 홍상의, 이름 밝히길 원치 않은 의사 2인, 활동가 : 김선주, 이명하)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채민석)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변혜진)
 - 새물약사회 및 농민약국(김수진, 박신희, 이슬비)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장태호, 전영진, 차수련)
-